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Purchasing
the Products of Social Disadvantaged Businesses

김범식 윤형호 김묵한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Purchasing the
Products of Social Disadvantaged Businesses

2013



■ 연구진 ■

연구책임	김 범 식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윤 형 호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김 목 한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황 민 영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 희망기업은 사회적 약자기업(Social Disadvantaged Business)을 의미
 - － 희망기업은 중증장애인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타기업 등으로 구성
 - － 특히 희망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칭

희망기업	중점관리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장애인이 근로자의 70% 이상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인 시설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기타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이 회사의 대표자인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기타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 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

〈그림 1〉 희망기업의 정의

- 희망기업의 업체유형은 대부분 기타 중소기업이며, 서울시와의 거래에서도 이들 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2012년 서울·경기지역의 희망기업은 약 134만개이고, 이중 중점관리기업은 990개로 전체 희망기업의 0.07%를 차지

- 기업유형 비중 : 기타 중소기업(99.6%) > 여성기업(0.23%) > 장애인 기업(0.07%) > 사회적기업(0.04%) > 중증장애인시설(0.03%) > 자활 기업(0.01%) 등의 순
- 2012년 희망기업 중 서울시와의 거래 기업수는 38,273개이고, 이중 1.67%인 641개가 중점관리기업에 해당
- 거래기업 비중 : 기타 중소기업(95.5%) > 여성기업(2.44%) > 사회적 기업(1.06%) > 중증장애인시설(0.51%) > 장애인기업(0.40%) > 자활 기업(0.10%) 등의 순

〈표 1〉 희망기업의 현황

(단위 : 개, %)

구 분	합계	중점관리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기타 중소기업
		소계	중증 장애인시설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기업 현황	1,336,001 (100.0)	990 (0.07)	351 (0.03)	533 (0.04)	106 (0.01)	863 (0.07)	3,089 (0.23)	1,331,059 (99.6)
거래 기업수	38,273 (100.0)	641 (1.67)	197 (0.51)	407 (1.06)	37 (0.10)	154 (0.40)	934 (2.44)	36,544 (95.5)

주 : 1. 기업현황은 서울·경기 기준이나, 중증장애인시설은 전국현황
 2. 기타 중소기업은 별도 인증확인이 없는 소규모 기업체를 모두 포함
 3. ()안은 비중

- 서울시는 2012년 6월부터 희망기업의 제품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중점관리기업을 중심으로 마련해 시행 중
 - 이는 희망기업, 특히 중점관리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가격·품질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제품생산과 판로확보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
 - 또한 기존 공공구매 계약 시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 등 계약상 우대조치가 있지만, 희망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도모하기에 역부족
 - 입찰 시 엄격한 수행실적 요구도 희망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표 2>와 같이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확대,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표 2>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증대방안

구 분	주요 내용
입찰 시 실적완화 및 유사 실적인정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 5억원 미만 일반용역에서 수행실적에 부여했던 배점을 폐지 또는 축소 ▷ 실적제한 완화 : 해당 목적물의 1배 이내에서 1/3배로 축소 ▷ 실적인정 범위 확대 : 해당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에서 유사한 실적으로 변경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 협상계약의 객관적 평가에서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로 희망기업의 부족점수를 보충하고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 ▷ 적격심사계약에서도 약자·우수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가산점이 확대·신설되고, 가산점도 차등 부여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	▷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희망기업제품을 우선구매 ▷ 수의계약 사유서, 일상경비(카드구매) 집행 지급품의서 개정으로 희망 기업 제품 구매 확대
공사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희망기업제품구매와 용역의뢰 명시	▷ 공사계약 : 계약 상대방이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용역을 위탁할 때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의 우선 사용 및 공사 관련 장비 등의 우선 임차 조항을 신설 ▷ 용역계약 : 해당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 등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특수조건 부여
기타 제도 변화	▷ 희망기업 주요 생산품에 대해 희망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 ▷ 장애인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시 가산점 부여 ▷ 희망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 등

- 이 연구의 목적은 2012년 6월 시행된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지원 방안(가산점부여, 진입장벽 완화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희망기업들의 공공구매 관련 애로사항 파악과 공공구매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2.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현황

- 2012년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액은 공공구매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6% 증가한 3조 5,552억원을 기록
 - －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희망기업제품 비중은 2011년 64.5%에서 2012년 71.5%로 전년 대비 7.0%p 확대
 - －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건수도 2011년 190,884건에서 2012년 229,013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
- 특히 희망기업 중 중점관리기업 제품 구매가 큰 폭으로 증가
 - － 2012년 중점관리기업 제품의 구매액은 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4% 증가
 - 자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액은 450억원으로 전년대비 287.9% 증가
 - 중증장애인시설의 제품 구매액도 250억원으로 전년대비 77.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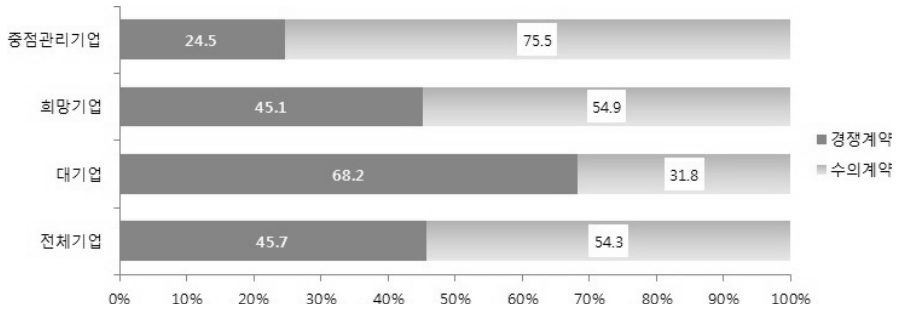
〈표 3〉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계	희망기업					
			중점관리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기타기업
			중증 장애인시설	사회적 기업				
2011	계	29,727	141	116	315	0	0	29,155
	시	11,738	10	5	34	0	0	11,689
	자치구	8,396	72	69	26	0	0	8,229
	투자출연기관	9,593	59	42	255	0	0	9,237
2012	계	35,552	250	450	177	3,976	7,740	22,959
	시	15,938	49	97	86	1,235	3,227	11,244
	자치구	10,128	125	278	72	969	3,012	5,672
	투자출연기관	9,486	76	75	19	1,772	1,501	6,043

주 :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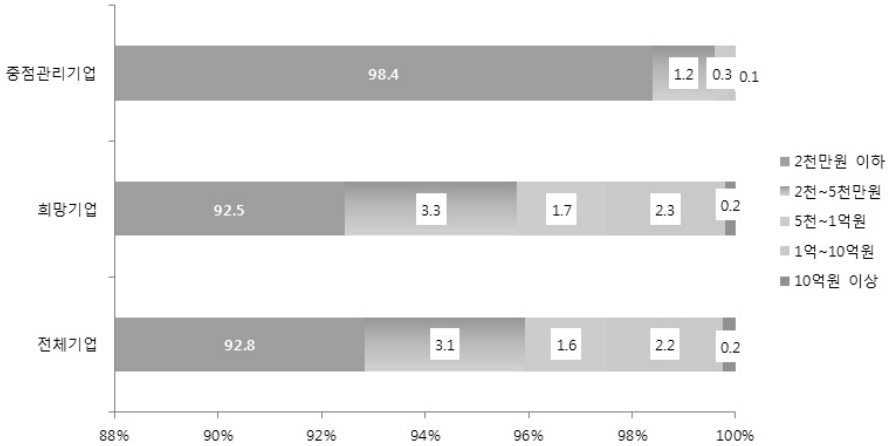
- 서울시 공공구매의 계약유형을 보면, 중점관리기업 등 희망기업과는 수의계약이, 대기업과는 경쟁계약 비중이 높음
 - －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 계약건수 중 54.3%가 수의계약이고, 45.7%가 경쟁계약
 - － 기업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의 수의계약 비중은 31.8%인 데 비해 희망기업 및 중점관리기업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54.9%, 75.5%로 높음



〈그림 2〉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기업유형별 계약유형 비율(계약건수 기준)

- 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공공구매는 전체 기업 및 희망기업에 비해 소액구매에 더 집중된 형태
 - － 2012년 서울시 총 공공구매 건수의 92.8%가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
 - 총 공공구매액 중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액 비중은 8.7%
 - － 희망기업에 대한 구매건수와 구매액 분포는 전체 기업과 유사
 - 2012년 희망기업에 대한 구매 중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 건수 비중은 92.5%,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액 비중은 11.1%

- － 반면, 중점관리기업에 대한 구매는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가 구매건수의 98.4%, 구매액의 56.3%를 차지



〈그림 3〉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구매금액별 구매건수 분포

- 이처럼 중점관리기업의 공공구매 참여가 소액거래에 집중된 것은 상대적으로 거래품목이 적고, 물품위주 구매이기 때문
 - － 2012년 서울시 중점관리기업의 구매품목은 총 118개로 총 거래품목의 6.6% 수준이고, 대부분 물품에 집중
 - － 또한 중점관리기업의 생산품목은 인쇄물, 식료품, 청소·방역 등이나, 2012년 본청 및 사업소에서 구매한 상위품목은 레미콘, 토목 등 중점관리기업을 통해 구매하기 어려운 품목이 다수

〈표 4〉 2012년 서울시 거래기업의 거래품목수

(단위 : 개)

	계	물품	공사	용역
전체구매품목	1,779	1,665	38	76
중점관리기업	118	92	2	24

3.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1)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경제적 효과

- 조사대상 희망기업의 2012년 평균 매출액은 약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원 증가
 - － 기업유형별 평균 매출액 : 중증장애인시설(11.2억원) > 사회적기업(0.7억원) > 자활기업(0.4억원) 등의 순
 - － 매출액 증가업체 비중 : 사회적기업(56.9%) > 중증장애인시설(51.4%) > 자활기업(50.0%) 등의 순
 - － 매출액 증가분 : 중증장애인시설(1.6억원) > 사회적기업(1.2억원) > 자활기업(0.6억원) 등의 순

〈표 5〉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매출액 규모와 증감액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표본크기	평균 매출액		매출액 증감액
		2011년	2012년	
전체 기업	297	683	784	101
사회적기업	181	598	715	117
자활기업	24	322	378	56
중증장애인시설	105	961	1,122	16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희망기업 배려를 위한 지원방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조사대상 : 중점관리기업 중심의 희망기업 406개
- 조사기간 : 2013년 3월 12일 ~ 3월 26일
- 조사내용 : 희망기업 지원방안 인지도, 매출액 및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수익성 및 고용개선 효과, 구매확대정책의 사회적 영향, 제도개선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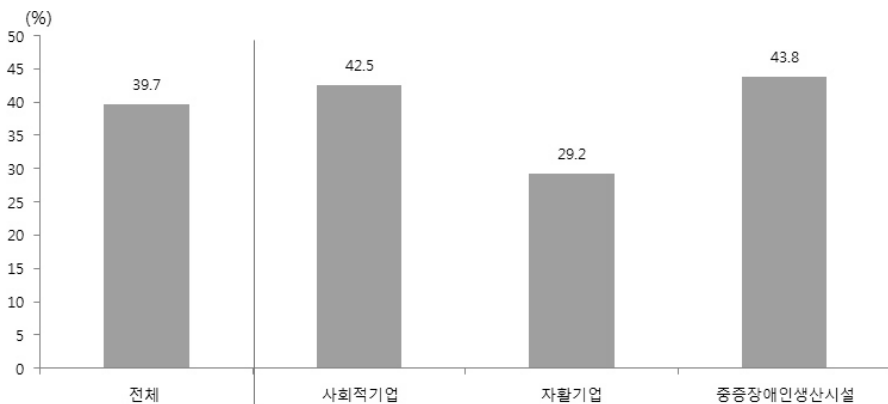
- 서울시와 거래경험이 있는 297개 희망기업 중 39.7%가 전년보다 서울시와의 거래금액이 증가
 - － 2012년 평균 거래금액은 전년보다 약 0.5억원 증가한 3.8억원 정도이고, 중증장애인시설과의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
 - 평균 거래금액 : 중증장애인시설(7.5억원) > 사회적기업(2.3억원) > 자활기업(2.1억원) 등의 순

〈표 6〉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거래금액 규모와 증감액

(단위 : 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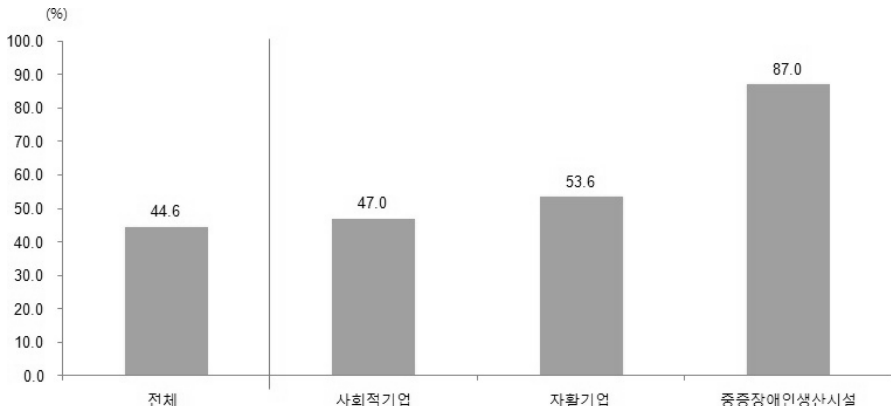
구분	표본크기	평균 거래금액		거래금액 증감액
		2011년	2012년	
전 체	297	334	379	45
사회적기업	181	175	230	55
자활기업	24	178	208	30
중증장애인시설	105	611	751	140

- － 거래금액이 늘어난 업체 비중은 중증장애인시설과 사회적기업이 각각 40%대로 높고, 자활기업은 20%대로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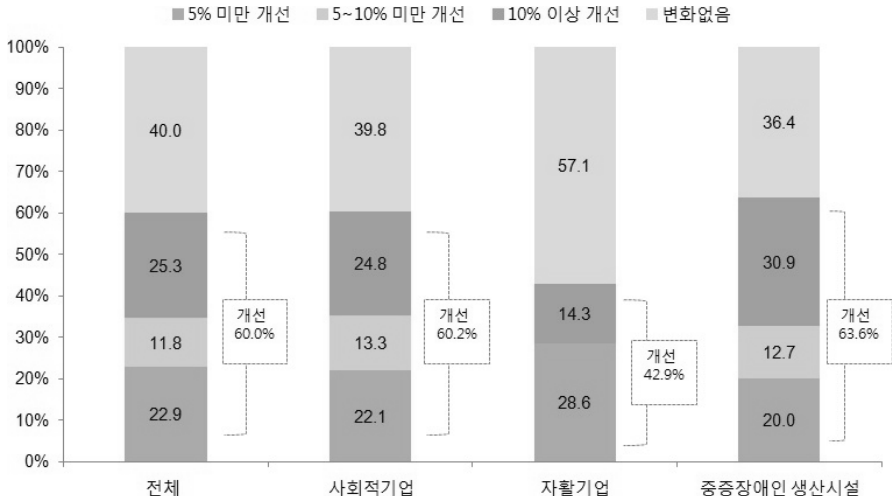
〈그림 4〉 2012년 희망기업 중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업체 비중

-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경우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는 2012년 매출액 증가에 44.6% 기여
 - － 거래금액 증가분이 매출액 증가에 미친 기여율은 중증장애인시설은 87.0%에 달하고, 사회적기업은 47.0%, 자활기업은 53.6% 수준
 - 거래금액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를 매출액 증가의 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구함



〈그림 5〉 2012년 희망기업의 매출증대에 대한 거래금액 기여율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업체들의 매출증대는 상당부분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
 - － 조사업체 중 60%가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매출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 매출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10% 이상 된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도 25.3%에 달함
 - － 특히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업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시설과 사회적기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수익성 개선 업체 비중 : 중증장애인시설 63.6%, 사회적기업 60.2%, 자활기업 42.9%



〈그림 6〉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수익성 개선 효과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으로 업체들의 고용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
 - － 희망기업제품의 구매확대 정책 이후 매출이 증가한 업체 중 51.7%가 고용이 증가
 - － 기업유형별로는 매출액, 순이익 등의 경영성과 개선이 컸던 중증장애인 시설업체들의 고용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고용증가 업체 비중 : 중증장애인시설 61.8%, 사회적기업 53.0%, 자활기업 14.2%
 -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 관련업체 생산증가 → 매출증가 → 수익성 개선 → 고용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이는 중점관리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업종이 많아 구매확대로 인한 매출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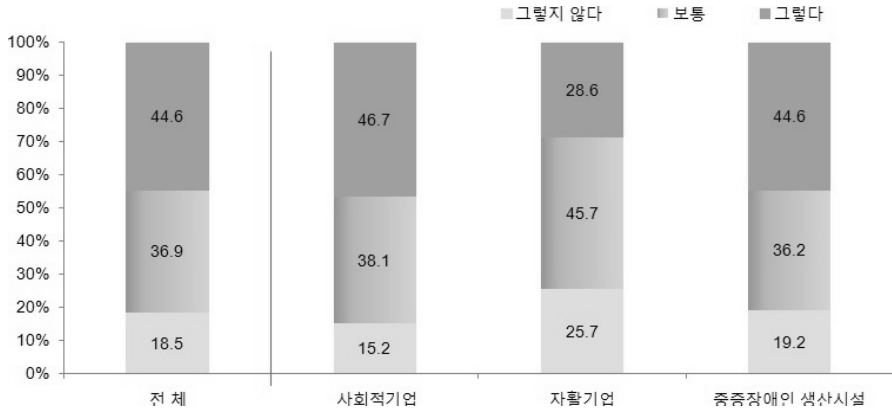
〈표 7〉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고용증가 효과

(단위 : 개, %)

구 분	표본 크기	고용증가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 체	170	51.7	3.5	8.2	6.5	3.5	30.0	48.2
사회적기업	113	53.0	3.5	9.7	8.0	3.5	28.3	46.9
자활기업	14	14.2	7.1	0.0	7.1	0.0	0.0	85.7
중증장애인시설	55	61.8	3.6	5.5	3.6	7.3	41.8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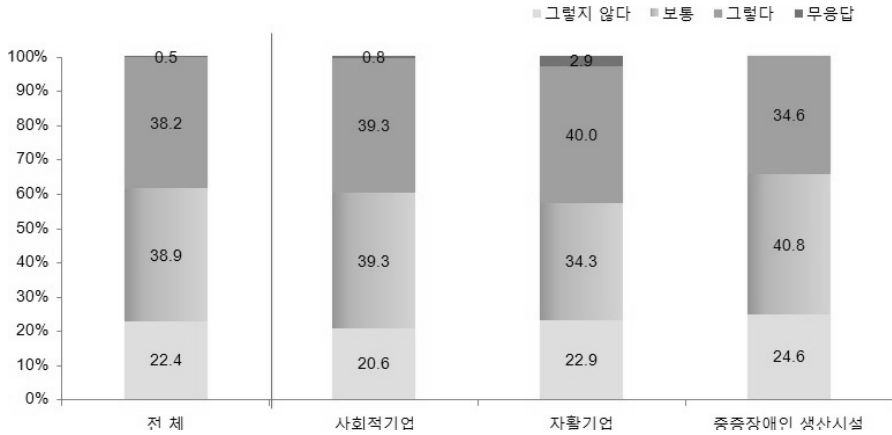
2)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적 효과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타 기관 조달제도에 보통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타 기관 조달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44.6% → 5점 척도 기준 3.32점으로 보통 수준
 - 반면,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은 18.5%에 불과
 - － 기업유형별로 보면, 자활기업보다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시설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적 응답비율 : 사회적기업 46.7%, 중증장애인시설 44.6%, 자활기업 28.6%
 -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조달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이유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구매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정부부처 및 다른 지자체의 구매정책이 확대·변화되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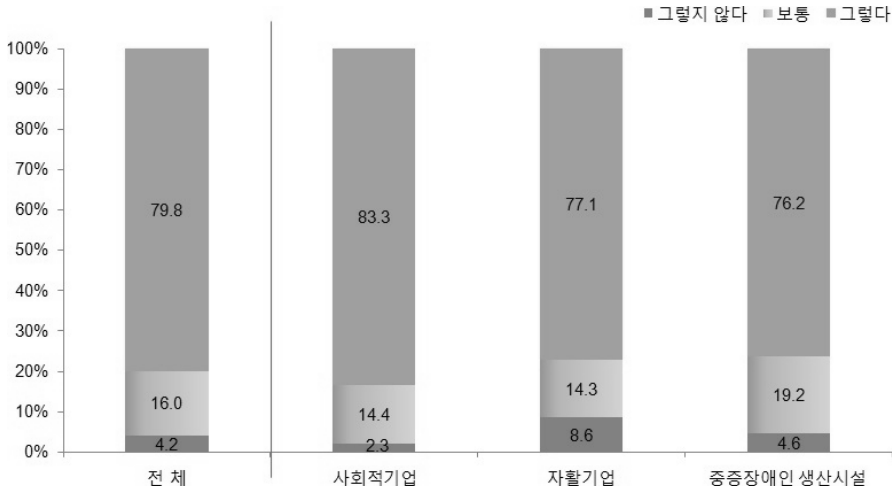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긍정적 영향 여부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인식에 미친 영향도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희망기업의 존재가치 등 공무원·일반시민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비율이 조사대상 기업의 38.2%를 차지 → 5점 척도 기준 3.18점으로 보통 수준
 - － 기업유형별로도 큰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시설이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을 낮게 보고 있음
 - 긍정적 응답 비율 : 자활기업 40.0%, 사회적기업 39.3%, 중증장애인시설 34.6%
 - － 이는 향후 희망기업에 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희망기업의 잠재고객인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인식제고는 향후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뿐만 아니라 희망기업 활력제고에도 촉매제 역할



〈그림 8〉 서울시 구매정책이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희망기업 인식에 미친 긍정적 영향 여부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기업의 장애인 채용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 조사대상 기업의 79.8%가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거나 활동할 계획이라고 응답 → 5점 척도 기준도 4.12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
 - － 기업유형별로 보더라도 모든 기업유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사회적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및 의향 : 사회적기업 83.3%, 중증장애인시설 76.2%, 자활기업 77.1%
 - － 이는 희망기업제품의 구매확대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화 및 고용 증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그림 9〉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및 의향 여부

3) 종합판단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아직 시행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희망기업의 매출증대에 상당히 기여
 -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가 조사업체의 2012년 매출액 증가에 44.6%나 기여
 - － 또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업체들의 매출증대가 상당부분 수익성 개선과 고용증가로 연결
 - 조사대상 전체 업체의 60%, 51.7%가 각각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매출증가로 수익성 개선과 고용증가 효과를 거둠
 -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 관련업체 생산 및 매출증가 → 수익성 개선 → 고용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
 - 이는 대부분의 중점관리기업이 노동집약적 업종인데다가,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매출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

〈표 8〉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단위 : 기여율, %, 점)

구 분		매출액 증가 효과		수익성 개선 효과		고용증가 효과	
			수준		수준		수준
전체 기업		44.6	강	60.0	강	51.7	강
기업 유형	사회적기업	47.0	강	60.2	강	53.0	강
	중증장애인시설	87.0	강	63.6	강	61.8	강
	자활기업	53.6	강	42.9	강	14.2	약

주 : 1. 매출액 증가 효과는 매출액 증가에 대한 거래금액 증가의 기여율
2. 수익성 개선 효과는 구매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응답비율
3. 고용증가 효과는 구매확대에 따른 고용증가 응답비율

- 그러나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사회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비해 약한 것으로 평가
-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 공무원 및 시민인식에 대한 영향은 보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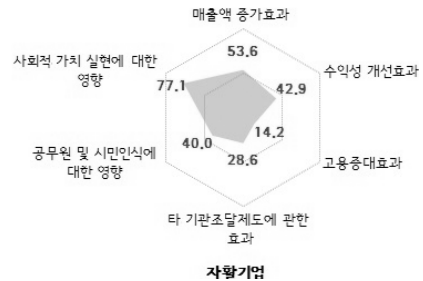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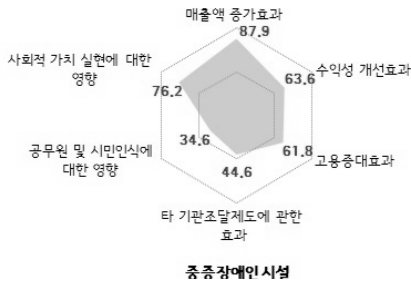
〈표 9〉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사회적 효과

(단위 : %, 점)

구 분		타 기관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		공무원 및 시민 인식에 대한 영향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영향	
			수준		수준		수준
전체 기업		44.6 (3,32)	중	38,2(3,18)	중	79,8(4,12)	강
기업 유형	사회적기업	46,7 (3,39)	중	39,3(3,22)	중	83,3(4,19)	강
	중증장애인시설	44,6 (3,30)	중	34,6(3,08)	중	76,2(4,06)	강
	자활기업	28,6 (2,91)	약	40,4(3,24)	중	77,1(3,94)	강

주 : 1. 타 기관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은 타 기관 조달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비율
2. 공무원 및 시민인식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비율
3.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
4. () 는 각 사회적 영향에 대한 5점 척도 기준 점수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사회적 영향이 경제적 영향에 비해 약한 것은 아직 이 정책이 실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
 - 정책의 주된 관심이 초기에는 매출증대에 집중되어 사회적 영향의 근간인 그 배경과 기본 철학이 아직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지 못함
- 다만,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을 계기로 업체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향은 매우 높아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향후 사회적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
-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기업 유형별로 그 효과가 다소 상이
 - 전체 조사대상의 63.3%를 차지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전체기업보다 다소 높지만 유사한 패턴
 - 경제적 효과는 전체 기업보다 0.2~2.4%p, 사회적 효과는 1.1~3.5%p 높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기업과 유사
 - 단, 사회적 효과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영향은 가장 큰 편
 -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전체 기업보다 매우 높은 반면, 사회적 효과는 전체 기업과 유사
 - 경제적 효과는 전체 기업보다 3.6~42.4%p를 상회하고, 특히 매출액 및 고용 증가 효과가 모든 기업유형 중 가장 크게 발생
 - 사회적 효과는 전체 기업보다 -3.6~0.0%p 낮지만 전반적으로 유사
 - 자활기업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전체 기업보다 낮은 수준
 - 경제적 효과는 전체 기업과 비교해 매출액 증가 효과는 9.0%p 상회하지만, 수익성 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는 전체 기업과 비교하여 각각 -17.1%p, -37.5%p로 낮은 수준
 - 사회적 효과도 전체 기업과 비교해 -2.7~2.2%p 범위로 상대적으로 부진



주 : 분야별 수치기준은 앞의 <표 8>, <표 9>와 동일

<그림 10>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기업유형별 사회·경제적 효과

4. 향후 정책방향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희망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므로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등 중점관리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실정
- －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는 단순한 자금지원보다 ‘관련업체 매출증가·수익성 개선·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라는 한 차원 높은 정책으로 판단

- 향후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 희망기업의 개념 재설정 및 우선순위 명확화, ② 통합구매정보시스템 구축, ③ 정책홍보 및 발주정보 제공 강화, ④ 구매품목 다변화와 제품구매 매뉴얼 작성, ⑤ 중견기업과 희망기업의 상생프로그램 구축 등에 주력할 필요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실효성 제고

희망기업 개념 재설정 및 우선순위 명확화	통합구매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홍보 및 발주정보 제공 강화	구매품목 다변화 와 제품 구매 매뉴얼 작성	중견기업과 희망기업 상생프로그램 구축
• 희망기업의 재설정 • 정책대상과 정책목표의 명확화	• 구매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및 체계화 작업 우선 • 희망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물품종류, 기관구매 촉진, 발주 정보 제공 등의 역할	• 소액 구매 건에 대한 발주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희망기업에 입찰 준비기간 제공 •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흡수에 관리	• 희망기업 생산제품 파악과 부처, 기관별 구매 품목 발굴 • 수익계약, 일상경비 지출 매뉴얼 마련을 통한 구매담당자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유도	• 중견기업과의 주계약자 공동분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희망기업의 입찰역량 제고 • 인센티브 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중견기업의 희망기업 용역, 물품 수요 유도

〈그림 11〉 향후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개선방향

① 희망기업의 개념 재설정 및 우선순위 명확화

- 정책대상인 희망기업 범위를 중기업을 제외한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한정
 - － 현재 희망기업은 사실상 중소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책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선택과 집중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
 - － 중점관리기업의 범위는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외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등을 추가해 점진적으로 확대
- 그다음에 희망기업 중 공공구매 필요성이 높은 기업유형을 파악해 지원 순위 및 수준, 구매목표 등을 연차별로 설정해 운영

- 시행 초기인 1~3년차에는 중점관리기업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공공구매 목표를 설정
 - 지원방법도 수의계약, 가산점 신설 및 확대 등 지원 대상별로 차별화
 - 공공구매 성과를 연차별로 점검해 일정 수준 자생력 기반이 조성된 기업 및 기업유형에 대해서는 지원순위를 조정하거나 졸업제 적용

② 통합구매정보시스템 구축

- 희망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및 구매정보 제공, 물품홍보, 인식제고 등을 위해서는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현행 서울시 공공구매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실적집계 위주로 희망기업의 체계적인 유형별 실적 조회가 어렵고 구매정보 제공, 물품 홍보 등 통합적 기능도 미흡
 - 특히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은 공공구매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구축할 필요
 -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은 발주자에게 사업자정보와 상품정보를, 사업자에게는 구매수요정보를 제공받는 접점
-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의 핵심은 물품코드 등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통한 DB 및 시스템 구축
 - 희망기업의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분류코드화를 추진
 - 현재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의 분류코드 부재
 - 정확한 실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적집계 기준을 정립하고 SMPP(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e-호조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개선 및 연계를 확대
 - 품목별, 업종별, 기업유형별, 자치구 및 산하기관별, 부처별 등 다양한 분류별 조회시스템 구축

③ 정책홍보 및 발주정보 제공 강화

- 현재 서울시 희망기업 공공구매는 정책인지도가 낮고, 발주정보 제공이 제한적
 - － 서울시와의 거래업체 중 69%가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잘 모를 정도로 정책홍보가 미흡
 - －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26.6%가 발주정보 부족 때문에 서울시와 거래회가 제약
- 중점관리기업 등 희망기업에 대한 정책홍보와 발주정보 서비스를 강화
 - － 서울시 홈페이지, 청책위크숍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추진
 - － 중점관리기업과 관련이 큰 소액구매 건에 대한 발주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이들 기업에 입찰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구매 정보시스템에 흡수 관리
 - 현재는 계약심사 대상(중합공사 5억원 이상, 비중합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만 발주를 예고

④ 구매품목 다변화와 희망기업제품 구매매뉴얼 작성

- 희망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서는 구매품목의 다변화, 구매품목과 생산품목의 미스매치(Mismatch) 해소가 필요
 - － 2012년 중점관리기업의 거래품목수는 전체 거래품목수의 6.6%에 불과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41.3%가 발주제품과 구매품목의 미스매치로 거래회가 제약
 - － 희망기업의 제품 파악과 구매품목 공시 강화, 부처·기관별 구매품목 발굴 등을 통해 구매품목 다변화와 구매와 수요의 미스매치 현상 해소
 - 서울시가 직접 구매하기 힘든 제품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시설 참여로 구매품목을 다변화

- 희망기업제품 구매는 주로 수의계약, 일상경비 지출의 물품 구매이므로 구매담당자의 역할이 중요
 - － 구매 담당자에 대한 감사 등을 고려한 법적 근거, 입찰기준,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와 업무 매뉴얼 제공
 - －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구매 쏠림 및 관행적 구매방지를 위해 업체 및 품목당 일정 비율 이상 구매 방지 등 보완장치 마련

⑤ 중견기업과 희망기업의 상생프로그램 구축

- 희망기업의 단독입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주계약자 공동분담 시스템 구축
 - － 희망기업과 계약분담을 할 경우 적격심사 배점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 계약체결 시 사용권은 중견기업이, 소유권은 희망기업이 가지는 형식으로 미국 SBA의 Mentor-Protege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
- 인센티브 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중견기업의 희망기업 용역, 물품, 공사 수요를 유도
 - － 인센티브 계약제도 : 계약조건에 명시된 하도급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최종 대금 지급 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 지급
 -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희망기업 용역의뢰를 명시하는 정책에 활용하면 중견기업의 희망기업 용역 구매 활성화가 기대

목 차

제1장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지원정책	3
제1절 공공구매의 개념과 지원제도	3
1. 공공구매의 개념	3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5
제2절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8
1. 희망기업의 정의 및 정책추진 배경	8
제3절 연구목적 및 연구흐름	22
1. 연구목적	22
2. 연구흐름	23
 제2장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현황	27
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추이	27
1.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규모	27
제2절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33
1.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현황	33
2. 희망기업제품의 유형별 계약건수와 구매금액	36
 제3장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47
제1절 조사개요	47
제2절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경제적 효과	49
1.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 효과	49
2. 고용증가 효과	58
3. 거시적 효과	60

제3절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적 효과	61
1. 타 기관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	61
2. 공무원 및 시민 인식에 대한 영향	63
3. 사회적 가치 실현 의향에 대한 영향	65
제4절 구매확대 관련 기타 사항	66
1. 정책인지 및 정책도움 여부	66
2. 거래기회 제약요인	71
3. 매출증대 및 거래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73
제4장 정책적 시사점	79
제1절 종합판단	79
제2절 향후 정책방향	83
1. 희망기업의 개념 재설정 및 우선순위 명확화	84
2. 통합구매정보시스템 구축	85
3. 정책홍보 및 발주정보 제공 강화	87
4. 구매품목 다변화와 희망기업제품 구매매뉴얼 작성	87
5. 중견기업과 희망기업의 상생프로그램 구축	88
참고문헌	93
부 록	97

표 목 차

〈표 1-1〉 민간구매와 공공구매 비교	4
〈표 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요	7
〈표 1-3〉 희망기업의 현황	10
〈표 1-4〉 희망기업의 우대 및 지원 현황	12
〈표 1-5〉 외국의 약자기업 구매확대 관련 주요 지원정책	13
〈표 1-6〉 5억원 미만 용역의 수행실적 배점 변화	15
〈표 1-7〉 협상계약의 가산점 개선	17
〈표 1-8〉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가산점 개선	18
〈표 2-1〉 2011년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제품별 공공구매 실적	27
〈표 2-2〉 2011년 16개 시·도 본청의 제품별 공공구매 실적	29
〈표 2-3〉 16개 시·도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액 추이	32
〈표 2-4〉 서울시의 총 구매액과 희망기업제품의 구매액 추이	33
〈표 2-5〉 서울시의 기관별 희망기업제품 구매액 규모	35
〈표 2-6〉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기업유형별 계약건수 및 비중	36
〈표 2-7〉 2012년 서울시의 계약유형 및 구매유형별 계약건수	38
〈표 2-8〉 2012년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의 기업유형 및 구매유형별 계약건수	38
〈표 2-9〉 2012년 서울시 구매유형별 구매금액	39
〈표 2-10〉 2012년 서울시 거래기업의 거래품목수	41
〈표 2-11〉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 주요품목별 구매실적	42
〈표 2-12〉 2012년 서울시의 구매품목 다양화 내역	43
〈표 3-1〉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특성	48
〈표 3-2〉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 확대정책의 기업에 대한 영향(기업유형별)	50
〈표 3-3〉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매출액 규모와 증감액	52
〈표 3-4〉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거래금액 규모와 증감액	53

〈표 3-5〉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 이후 거래금액 증가품목	54
〈표 3-6〉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고용증가 효과(기업유형별)	59
〈표 3-7〉 2012년 서울시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액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61
〈표 3-8〉 서울시의 희망기업 지원방안 중 도움이 된 정책(기업유형별)	69
〈표 3-9〉 희망기업의 서울시와 거래기회 제약요인(기업유형별)	72
〈표 3-10〉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기업유형별)	74
〈표 3-11〉 사업체 유형별 서울시와 거래확대를 위한 사업체의 개선사항	75
〈표 4-1〉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	80
〈표 4-2〉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사회적 효과	81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증대방안	14
〈그림 2-1〉 전국 공공구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및 비중 추이	28
〈그림 2-2〉 서울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및 구매비중 추이	31
〈그림 2-3〉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기업유형별 계약유형 건수비율	37
〈그림 2-4〉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구매금액별 구매건수	40
〈그림 3-1〉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기업도움 측면	49
〈그림 3-2〉 2012년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매출액 증가업체 비중	51
〈그림 3-3〉 2012년 희망기업 중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업체 비중(기업유형별)	52
〈그림 3-4〉 2012년 희망기업의 매출증대에 대한 거래금액 기여율(기업유형별)	55
〈그림 3-5〉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수익성 개선 효과	56
〈그림 3-6〉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수익성 개선 효과(기업유형별)	57
〈그림 3-7〉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고용증가 효과	58
〈그림 3-8〉 서울시 희망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영향	62
〈그림 3-9〉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영향(기업유형별)	63
〈그림 3-10〉 서울시 구매정책이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희망기업 인식에 미친 영향 여부	64
〈그림 3-11〉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인식에 미친 긍정적 변화 정도	64
〈그림 3-12〉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및 의향	65
〈그림 3-13〉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및 의향	66
〈그림 3-14〉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거래업체 인지도	67
〈그림 3-15〉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거래업체 인지도(기업유형별)	67
〈그림 3-16〉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 중 도움이 된 방안	68

〈그림 3-17〉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의 효과 여부	70
〈그림 3-18〉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의 효과 여부(기업유형별)	70
〈그림 3-19〉 희망기업의 서울시와 거래기회 제약요인	71
〈그림 3-20〉 입찰에서 낙찰되지 못한 이유	72
〈그림 3-21〉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73
〈그림 3-22〉 서울시와 거래확대를 위한 사업체의 개선사항	75
〈그림 4-1〉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사회·경제적 효과	82
〈그림 4-2〉 향후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개선방향	83
〈그림 4-3〉 국가무역통계포털서비스	86

제1장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지원정책

제1절 공공구매의 개념과 지원제도

제2절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제3절 연구목적 및 연구흐름

제1장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지원정책

제1절 공공구매의 개념과 지원제도

1. 공공구매의 개념

- 공공구매는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교육, 국방, 전기·수도 등 시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¹⁾
 - － 공공구매의 범위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수요에 의한 단순물품의 조달부터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한 서비스 구매까지 매우 광범위
- 공공구매는 민간구매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²⁾
 - － 재원이 세금인 공공구매는 민간구매와 달리 각 구매주체의 조달계약 내용이 특정 법규 형태로 엄격하게 규정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특정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기타 계약관련 개별 법률 등이 대표적

1) 김대식, 20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제3호
2) 김대식, 20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제3호, 중소기업청, 20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서 참조

- 민법 등은 사인 간의 계약을 규범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반면, 국가계약법 등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만 기속력을 가짐
- 민간구매와 달리 공공구매는 수의계약 등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이 많음
 - － 공공구매는 재정 집행규모 및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유도, 균형성장 지원, 복지 정책 등 각종 정부 정책을 반영해 운영
 - － 민간구매는 발주요건으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중시하고 성과 위주이지만, 공공구매는 발주요건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우선시하고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를 중시

〈표 1-1〉 민간구매와 공공구매 비교

구분	민간구매	공공구매
발주주체	○ 기업 또는 개인	○ 공공기관
발주성격 및 발주요건	○ 성과중심적 ○ 효율성, 효과성 우선	○ 과정중심적 ○ 투명성, 공정성 우선
조달시장 접근	○ 기회의 불평등 (승자 독과점 가능)	○ 기회균등(대·중·소기업, 중앙·지방 간 균형발전 도모) ○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
경쟁방법	○ 약탈적 경쟁관계(일방의 이익 고려)	○ 협력적 경쟁관계(쌍방의 이익 고려)
계약법령	○ 민법, 상법 - 계약자유 원칙 적용	○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제약이 많음
통 제	○ 약한 내부통제	○ 강한 외부통제
자금의 원천	○ 사적 자금의 집행으로 자율성과 신속적 운영 가능	○ 세금,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금이므로 법령 준수가 필수
조달수익대상	○ 개인이나 기업에 국한	○ 불특정 다수 국민
계약상의 위험	○ 크다	○ 작다
위험부담	○ 개별주체에 미침	○ 불특정 국민

출처 : 김대식, 20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제3호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가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³⁾
 - －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공사·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과의 수의계약이나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방식을 통해 구매
 - 이 제도를 통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이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주회 증대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으로 지칭)⁴⁾
 - －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판로지원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3) 김정포·백창석 외 2인, 2006, 「공공조달시장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4) 중소기업청, 20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서 참조 및 재인용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등 다양⁵⁾
 -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만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 직접생산확인제도 :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 간 경쟁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조달 계약 체결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 중기청장이 지정한 자재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공사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 －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 및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신제품 인증,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신기술인증,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등
 -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연중 구매 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목표비율,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등을 설정
 -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최저가 낙찰 방지 및 적절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선별 등을 위해 입찰참여 중소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후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5) 중소기업청, 20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서 참조

- 규모별 경쟁제도 : 낙찰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입찰 참여 범위를 설정
-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을 구축해 운영

〈표 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요

제도	주요내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방법을 활용 ○ 구매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95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120개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 간 경쟁 저해행위를 방지 ○ 확인대상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조·생산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제도	○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 구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20개 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 의욕 고취가 목표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 성능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 성능인증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제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및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원가 계산비용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공공기관에서 연중 구매 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0% 이상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최저가 낙찰방지, 적절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입찰참여 중소기업자 중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심사대상 :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구매를 위한 제한경쟁 입찰 시
규모별 경쟁제도	○ 낙찰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한해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상정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출처 : 중소기업청, 20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서를 참조해 작성

제2절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희망기업의 정의 및 정책추진 배경

1) 희망기업의 정의

-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타기업 등으로 일종의 사회적 약자기업(SDBs : social disadvantaged businesses)을 의미
 - － 서울시는 희망기업 중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등 나머지 기업은 기타 희망기업으로 설정
- 중증장애인시설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장애인이 근로자의 70% 이상이고, 이중 중증 장애인이 60% 이상인 시설
 -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지칭
 -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
 -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 2에 근거해 장애인기업 생산품의 구매계획 작성 등 구매를 촉진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근거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

-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근거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
-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해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기타 기업
 - － 소상공인 :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인 기업
 - －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인 기업
 - － 중기업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
 -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50인 미만인 기업이나 자본금 80~30억원 이하인 기업 또는 매출액 300~5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지칭

2) 희망기업 현황

- 2012년 현재 서울·경기 지역의 희망기업은 약 133.6만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
 - － 중점관리기업인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은 총 990개로 희망기업의 0.07%를 차지
 - 중증장애인시설 351개, 사회적기업 533개, 자활기업 106개

- 이밖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은 각각 863개, 3,089개, 133만개로 기타 중소기업이 희망기업 중 가장 큰 비중(99.6%)을 차지
- 희망기업의 서울시와 거래기업수를 보면, 기타 중소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미미
- 희망기업 중 기타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95.5%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여성기업(2.44%), 사회적기업(1.06%), 중증장애인시설(0.51%), 장애인기업(0.40%), 자활기업(0.10%) 등의 순

〈표 1-3〉 희망기업의 현황

(단위 : 개, %)

구 분	합계	소계	중점관리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
			중증 장애인시설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기업 현황	1,336,001 (100.0)	990 (0.07)	351 (0.03)	533 (0.04)	106 (0.01)	863 (0.07)	3,089 (0.23)	1,331,059 (99.6)
거래 기업수	38,273 (100.0)	641 (1.67)	197 (0.51)	407 (1.06)	37 (0.10)	154 (0.40)	934 (2.44)	36,544 (95.5)

주 : 1. 기업현황은 서울·경기 기준이나, 중증장애인시설은 전국현황

2. 기타 중소기업수는 별도 인증확인이 없는 소규모 기업체를 모두 포함(중소기업청 2010년 통계 적용)

3. ()안은 비중

출처 : 서울시 재무과, 2012.4,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 계획”

3) 정책추진 배경

- 서울시는 2012년 들어 제품 생산과 판로확보에 한계가 있는 희망기업의 제품구매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는 대다수 희망기업이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낮아 품질·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제품 생산과 판로확보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

- 특히 기존 공공구매 계약 시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 등 계약상 우대 조치가 있지만, 희망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
 - － 수의계약은 희망기업에 대한 고려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을 위주로 체결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희망기업의 제품 구매가 가능
 - 그러나 시의회 및 감사 시 지적과 특혜시비 등으로 경쟁계약을 하거나 제품의 질과 가격문제 등으로 일반기업과 계약을 체결
 - －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은 응찰업체가 평균 200개로 많아 희망기업이 가격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낮음
 - 대부분 공사와 일반용역에서 활용되는 적격심사제는 가격 1순위로 선정된 후에만 가산점 제도가 적용⁶⁾
 - 희망기업이 가격 1순위가 되어도 가산점이 다소 낮거나 가산점이 동일하게 부여되어 구매 우선순위에 따른 차별화 확보에 어려움 발생
 - － 협상계약도 구매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가산점이 동일하게 부여
 - 협상계약은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설계 및 정보통신 등의 용역에 주로 활용되며, 가산점제도가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협상계약은 가격 20%, 객관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를 합산해 업체를 선정하는데, 가산점(총 8점)은 객관적 평가의 점수범위 내에서만 부여
 - － 조달계약은 특별한 우대 조항이 부재
 - 조달계약 중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된 희망기업에 대해 그동안 구매우선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 대형공사는 대기업과 계약체결 시 희망기업에 하도급을 주거나 희망기업의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의 공사계약 관련 특수조건이 부재

6) 적격심사는 1차 가격(30~90%) 심사 후 2차 수행능력(70~10%) 평가

〈표 1-4〉 희망기업의 우대 및 지원 현황

구 분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우선구매 비율	▷용역·물품의 1% 이상	-	-	▷공사 3% ▷용역·물품 5% 이상	▷구매액의 50% 이상
계약우대	▷수익계약 가능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
기타 지원	▷인건비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	▷임금지원(150만원) ▷용자·컨설팅 등	▷의무채용 미이행 시 부담금 ▷고용장려금		

출처 : 서울시 재무과, 2012.4,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 계획”

- 또한 입찰 시 엄격한 수행실적 요구도 희망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 진출하
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
 - － 그동안 계약제도가 계약이행의 안정성 및 공사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
해 입찰업체의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위주로 운영된 결과, 대다수 희망
기업은 입찰 자체가 어렵거나 낙찰 가능성이 저조
 - － 이는 희망기업, 즉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구매확대에 대한 관심이 전
반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
- 이밖에 희망기업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배려도 부족
 - －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시 가산점을 부여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하고, 희망기업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가산점이 동일하
게 부여
- 한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소규모 약자기업의 구매 확대를 위해 각종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추세
 - － 미국은 중소기업 할당제도(Small Business Set-Asides), 8(a) 프로그램, 가
격평가우대제도(Evaluation Preference for Small Disadvantaged Businesses)
등을 통해 소규모 약자기업을 지원

- 영국은 특별계약협약(Special Contract Arrangements), 유보계약(Reserved Contracts) 등을 통해 약자기업을 지원
- 캐나다는 인디언 원주민 기업 구매우대제도 등을 통해 원주민 기업과의 계약체결 건수 확대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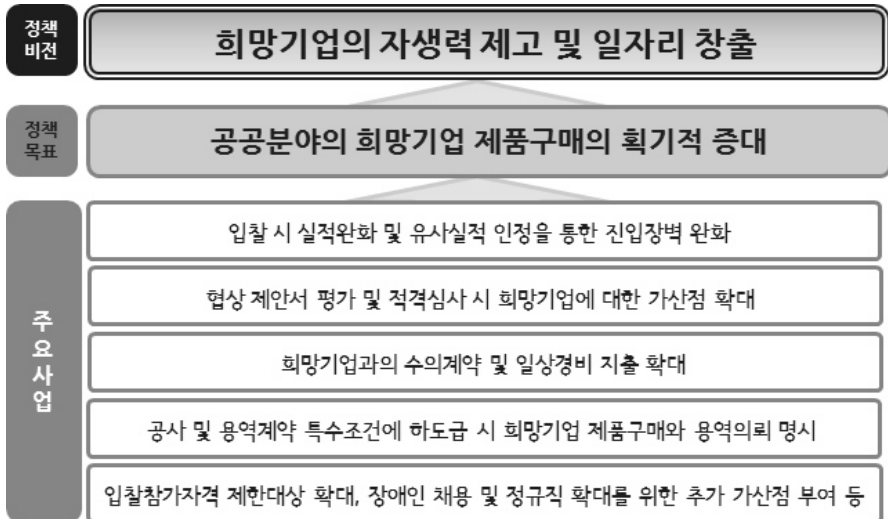
〈표 1-5〉 외국의 약자기업 구매확대 관련 주요 지원정책

국 가	지원제도	주요 내용
미국	중소기업 할당제도	▷ 특정 구매에 대해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 정부구매의 일정 비율이 중소기업에게 수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품목구매 할당(Class Set-asides)을 통해 특정 물품 및 서비스의 품목구매를 중소기업에게 독점적 참가자격 부여
	8(a) 프로그램	▷ 연방정부나 기관은 일부 조달을 중소기업청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조달을 수의계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소유한 소규모 업체와 하청계약을 체결 ▷ 연방조달정책은 연방기관들이 계약 중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기업과 체결하도록 규정
	가격평가우대 제도	▷ 상무부가 지정한 물품을 경쟁방법으로 구매할 때, 중소 약자기업의 제안 가격 평가 시 최대 10%까지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
영국	특별계약협약	▷ 특별계약협약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인력을 50% 이상 고용한 비영리 기업에 대해 정부구매자는 이들과의 거래 증진을 위해 노력 ▷ 모든 입찰서가 경제적으로 동등할 경우에는 특별계약협약 등록 공급자에게 우선 낙찰권을 제공
	유보계약	▷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작업장에게만 공공조달 참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반적인 공공계약 낙찰뿐 아니라 기본협약(계약당국과 공급자 간 일정기간에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는 협약) 등에도 적용 가능
캐나다	인디언 원주민 기업 구매우대 제도	▷ 원주민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없이 원주민 기업과의 계약체결 건수를 늘리려는 취지 ▷ 계약방식으로는 원주민 기업 내에서만 경쟁하는 할당방식, 원주민 기업을 하청기업으로 참여시키는 방식, 타 원주민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장려하는 방식 등을 활용

출처 : 김대식, 20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제3호, 김정포 · 이미정 외 3인, 2008,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BC)분석 연구」, 조달청

4)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서울시는 희망기업의 제품구매 증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 배려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였는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
 - － 첫째, 입찰시 실적 완화 및 유사실적 인정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 － 둘째,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 － 셋째,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
 - － 넷째, 공사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희망기업제품 구매와 용역의뢰를 명시
 - － 이밖에 희망기업제품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확대, 장애인 채용 및 정규직 확대를 위한 추가 가산점 부여 등이 있음



주 : 서울시의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그림 1-1〉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증대방안

(1) 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 및 유사실적 인정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 경영 상태나 실적 문제가 별로 크지 않은 ‘소규모 계약’은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품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중규모 이상 계약’은 실적제한 완화 및 유사실적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 진입장벽은 공사·용역·물품의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영상태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을 요구하거나, 공사·용역의 수행실적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하여 유사 수행실적을 배제할 때 발생
 - － 또한 행정편의 및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공사·용역을 너무 큰 규모로 발주할 경우 수행실적이 적은 희망기업의 응찰기회가 배제
- 5억원 미만 일반용역에서 수행실적에 부여했던 배점을 폐지 또는 축소해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최소화
 - － 2억원 미만 용역에서 가점 2점을 부여했던 수행실적을 폐지하고, 2~5억원 미만 용역에서 15점이었던 수행실적을 5점으로 축소

〈표 1-6〉 5억원 미만 용역의 수행실적 배점 변화

구분	2억원 미만 용역		2~5억원 미만 용역	
	기존	개선	기존	개선
입찰가격	90점	90점	70점	70점
경영상태	10점	10점	15점	25점
수행실적	가점 2점	0점	15점	5점

출처 : 서울시 재무국, 2012.5,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 특히, 희망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실적제한을 대폭 완화한 반면, 실적인정 범위는 확대
 - － 실적제한 완화 : 해당 목적물의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로 대폭 축소
 - 단, 발주부서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부서와 조정 가능

- － 유사실적 인정 : 해당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에서 ‘유사한 실적’으로 변경하여 실적인정 범위를 확대(입찰공고 시 명기)

〈참고〉 유사실적 인정에 대한 예시

- 업무용빌딩 청소실적 : 오피스텔 · 상가(민간시설) 등의 청소실적도 인정
- 수전선로 전기공사 : 한전 발주 실적만 실적으로 인정했으나, 모든 전기공사 실적을 인정
- 고가도로 건설 : 복개구조물 건설도 실적에 포함

- 공사 · 용역 · 물품의 발주 시 희망기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발주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해 조정
 - － 발주규모가 너무 커서 희망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약 부서는 분리발주 가능여부, 적정규모 등을 입찰공고 이전에 판단해 적정규모로 발주 유도
 -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부서에서 계약규모 등을 검토 조정

(2) 협상계약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 협상계약의 객관적 평가에서 가산점 확대로 희망기업의 부족점수를 보충하고,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
 - － 협상계약의 객관적 평가(20점)에서 2011년부터 희망기업에 부여된 가산점이 진입 및 낙찰 장벽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고, 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차별화도 부재
 - － 객관적 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가산점이 신설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한 가산점이 확대
 - 약자 · 우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산점 확대 · 신설(4.8 → 8.4점)

- 또한 중소기업 중 우선배려 대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장애인기업, 소기업의 순서로 정하고, 그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
- 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가산점의 차등부여 : 현행 0.6점 → 개정 1.0 ~ 2.0점

〈표 1-7〉 협상계약의 가산점 개선

구분	항목	기존(8점)		개정(15.6점)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	2	2
	1.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6	0.6 0.3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6	0.3	1.2	1.2
	가.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 고용률이 1.5% 이상인 기업		0.3 0.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6	0.2 0.2 0.2	1.0	1.0 1.0 1.0
	1. 최근 3개월간 평균 5% 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 이상 신규채용	0.6	0.6 0.3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0.6	0.3 0.3	0.6	0.3 0.3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5	1.5 1.0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5	1.5 1.0
일자리 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2	2
고용안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	-	4	4
근로관계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	-	-5	-5

출처 : 서울시 재무국, 2012.5,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 적격심사계약에서도 약자·우수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산점이 확대·신설(4.8점 → 8.4점)되었고, 가산점도 차등 부여(0.3점 → 0.3~2점)
- － 기존에는 적격심사계약 기준(10종) 중 일반용역 1종만 사회적·장애인·여성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미반영

〈표 1-8〉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가산점 개선

구분	항목	기존(2.1점)		개정(9.1점)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	2	2
	1.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3	0.3 0.15	1.0	1.0 0.5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 고용률이 1.5% 이상인 기업	0.3	0.3 0.3 0.15	1.0	1.0 1.0 0.5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 가.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3	0.3 0.3 0.15 0.3	0.5	0.5 0.5 0.3 0.5
	1. 최근 3개월간 평균 5% 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 이상 신규채용	0.3	0.3 0.15	0.3	0.3 0.15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0.3	0.150.15	0.3	0.15 0.15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0.3	0.3	0.5	0.5 0.3
중소기업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0.3	0.3	0.5	0.5 0.3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1점)	-	-	1	1
일자리 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1점)	-	-	1	1
고용 안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	-	2	2
근로관계법 준수 정도	1.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6	-1 (근로조건기준 미달) -5 (최저임금미달)	-5	-5 (각 -1)

출처 : 서울시 재무국, 2012.5,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3)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

- 수의계약으로 희망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 －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희망기업제품을 우선 구매
- 수의계약 사유서, 일상경비(카드구매) 집행 지급품의서 개정으로 희망기업제품의 구매 확대
 - － 수의계약 사유서에 우선 구매할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 하게 하고, 해당 제품이 없으면 그 사유를 기재토록 개선
 - － 수의계약 시 계약부서는 ① 중증장애인시설, ② 사회적·장애인기업, ③ 여성소기업, ④ 소기업, ⑤ 기타 여성기업, ⑥ 중기업 순으로 계약토록 전수 점검하여 희망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 규정 신설 추진(행안부 건의)
 - － 현행 지방계약법상 장애인복지 시설·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판로 확보에 한계

(4)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희망기업 용역의뢰 명시

- 공사는 계약 상대방이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의 우선 사용 및 공사 관련 장비 등의 우선 임차 조항을 신설
 - －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붙이고 있으나 약자기업의 제품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은 규정되지 않음

-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는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관리
- 용역도 해당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 등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특수조건 부여
 - 용역의 경우 개별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에만 사업별로 특수조건을 붙이고 있으나 약자기업 배려에 대한 사항은 없음
 -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 등에 약자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계약의뢰
 - 계약부서는 약자기업 배려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계약절차를 진행

(5) 기타 제도변화 사항

- 희망기업제품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 확대 : 희망기업의 주요 생산품에 대해 희망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⁷⁾
 - 현재 인쇄물, 아스콘 등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은 195개 품목에 대해서는 법률로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법률의 근거 필요
 -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등의 주력제품(복사용지, 화장지, 청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하 계약(예 : 5천만원 이하)에 한해 이들 기업으로 입찰제한
 - 동시에 희망기업 관련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계약법령의 개정 추진

7) 이는 희망기업 가산점 제도가 희망기업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지만,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임

- 장애인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시 가산점 부여
 - － 그동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8월부터 협상계약에만 가산점을 부여⁸⁾하였으나, 장애인 신규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고용과 차등해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2012년 6월부터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에도 일자리 창출 가산점 신설(0점 → 1점)
 -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신규채용 시 가산점 신설
 - 1명당 0.4점(최고 4점)이며, 협상 및 적격심사 계약에 모두 적용
 - 장애인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입찰 시 신규채용·정규직화 확약서 요구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획서 및 착공계 제출 시 고용보험 증명서 등으로 서류 확인
- 희망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
 - －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희망기업에 대한 배려는 확대하되, 품질미달이나 납기 미이행 등에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제재
 -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지체상금 부과 등과 공공구매 통합관리 시스템에 품질미달 납품업체·지연납품·계약미이행 등 지방계약법령 위반업체 명단 관리
 - － 특히 희망기업제품 구매 시 자체 생산제품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희망기업의 생산기반 도모
 - 희망기업이 자사 생산품으로 제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토록 함⁹⁾

8) 당해 사업 관련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채용 시 1명당 0.2점, 최고 2점 가산점 부여

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쇄, 복사지, 화장지 등 195개 품목)은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제3절 연구목적 및 연구흐름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2012년 6월 시행된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지원 방안(가산점부여, 진입장벽 완화 등)이 사회·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 첫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여부를 분석
 -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정책 이후 서울시와 계약을 맺거나 파급효과를 얻은 희망기업의 재무성과(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 품목별 구매액 증가율, 고용증진 효과 등을 파악
 -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정책 이후 타 기관의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식에 대한 영향 등을 파악
 - － 둘째, 희망기업들의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공구매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활용
 - － 문헌조사 : 공공구매 관련 기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주요 분석방법 및 이론적 틀을 정립
 - － 설문조사 : 총 406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설문조사
 - － 자문회의 : 공공구매 관련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과의 자문회의

2. 연구흐름

- 연구의 흐름(flow)은 다음과 같음

제1장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지원정책

- 공공구매의 개념과 지원제도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제2장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현황

- 시·도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추이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제3장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경제적 효과
-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적 효과
- 희망기업제품 구매 관련 애로사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판단
- 희망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2장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현황

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추이

제2절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제2장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현황

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추이

1.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규모

- 2011년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약 67.7조 원 수준
 - － 2011년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총 공공구매액은 약 99.8조원이고, 이중 67.8%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 2011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물품 구매액은 약 20조원이며, 이중 8.4%가 기술제품 구매액이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10%)에는 미달
 - － 2011년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2.6조원(총 구매액의 2.6%),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0.3조원(총 구매액의 0.2%)에 불과

〈표 2-1〉 2011년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제품별 공공구매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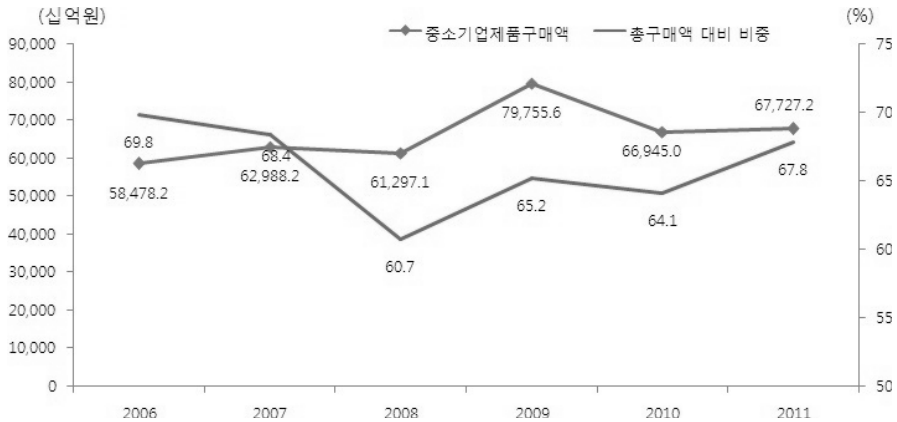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구매	중소기업 제품구매	중소기업 물품구매	기술개발 제품구매	여성기업 제품구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행정기관	51,477,502	39,417,051	12,735,158	1,109,685	1,145,743	170,433
공공기관	48,371,891	28,310,197	7,215,284	573,844	1,450,095	102,822
총계	99,849,393	67,727,248	19,950,442	1,683,529	2,595,838	273,255

주 : 경상가격 기준

출처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2006년 이후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9년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으나, 총 구매액 대비 비중은 2008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
-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 이후 큰 등락을 보이지 않다가 2009년 약 8조원 수준으로 일시 급등한 후¹⁰⁾ 다시 예년 수준으로 복귀
- 2006~2011년 중 중소기업제품의 평균 구매액은 약 66.2조원
- 그러나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비중은 2008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
- 총 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비중은 2006년 69.8%에서 2008년 60.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그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노력 등에 힘입어 2011년에는 67.8%까지 확대



주: 경상가격 기준

출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그림 2-1〉 전국 공공구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및 비중 추이

10) 200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약 8조원까지 증가한 것은 그 해 총 공공구매액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09년 전국의 총 공공구매액은 122.3조원으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나 2009년 총 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비중은 65.2%로 예년에 비해 높지 않음

- 2011년 서울시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약 2조원으로 서울시 본청 총 구매액의 65.6%를 차지
- － 2011년 서울시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규모 자체는 16개 시·도 중 5위 수준
- 각 지자체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순위는 경기, 전남, 경남, 경북, 서울 순

〈표 2-2〉 2011년 16개 시·도 본청의 제품별 공공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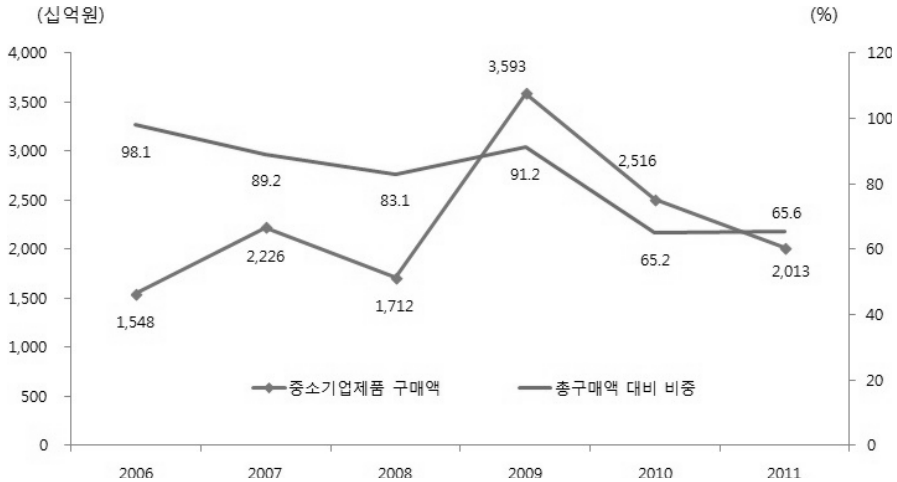
구분	총 구매액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 물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제품
경기	4,246,024	3,405,975	872,155	170,111	83,648	16,055
전남	2,720,307	2,573,072	607,492	133,019	33,484	8,519
경남	2,767,926	2,412,518	645,412	54,436	58,615	6,890
경북	2,722,516	2,347,170	619,048	84,653	53,323	11,266
서울	3,068,880	2,013,323	465,427	25,877	77,946	5,982
강원	2,061,116	1,854,307	476,236	49,020	38,511	1,758
전북	1,793,873	1,654,309	417,130	65,845	37,283	3,341
충남	1,919,345	1,647,517	419,719	70,338	33,074	3,855
충북	1,174,377	1,022,520	204,557	28,710	24,776	2,018
부산	984,643	800,769	187,266	24,528	31,652	2,787
인천	1,121,402	667,237	116,288	17,783	20,939	3,129
제주	756,984	660,654	188,719	9,210	25,671	638
대구	824,860	530,767	122,149	21,763	11,574	3,817
울산	460,336	393,003	149,585	25,159	7,765	1,299
대전	364,780	320,907	104,025	13,005	18,364	5,089
광주	373,376	289,228	40,589	9,723	8,781	302

주 : 2011년 경상가격 기준이며, 공공구매액은 각 시·도 본청 기준

출처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그러나 2011년 서울시 본청의 공공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비중은 65.6%로 16개 시·도 중 14위로 부진
 - 2011년 16개 시도별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은 전남(94.6%), 전북(92.2%), 강원(90.0%), 대전(88.0%), 제주(87.3%) 등의 순
- 특히 서울시 본청의 공공구매실적을 제품별로 보면, 총 구매액 중 여성 기업제품 비중은 2.5%로 16개 시·도 중 4위로 높으나, 대표적 약자기업인 장애인기업제품 비중은 0.19%로 16개 시·도 중 11위로 낮음
 - 2011년 16개 시·도별 총 구매액 중 여성기업제품 비중은 대전(5.0%), 제주(3.4%), 부산(3.2%), 서울(2.5%) 등의 순
 - 2011년 16개 시·도별 총 구매액 중 장애인기업제품 비중은 대전(1.4%), 대구(0.46%), 경북(0.4%), 경기(0.38%) 등의 순
- 한편, 서울시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9년에 큰 폭으로 급등한 후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은 2010년 이후 다시 반등하는 추세
 - 서울시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 약 1.5조원에서 2009년에는 3.6조원까지 급증했으나, 이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하락
 - 2006~2011년 중 서울시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평균 구매액은 약 2.3조원 정도
 - 2011년 서울시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총 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011년 서울시 본청의 총 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비중은 65.6%로 전년 대비 0.4%p 확대
 - 서울시 본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2009년 91.2%에서 2010년 이후 65%대로 급감한 것은 통계작성 차이 등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

-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정보시스템 통계는 기본적으로 등록업체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시 본청 이외의 산하기관 통계는 제외
- 또한 서울시 본청은 2010~2011년 중 대형공사¹¹⁾ 입찰이 진행되면서 안정성 및 계약이행능력 등이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소기업 입찰참여가 제한



주 : 경상가격 기준이고, 서울시 본청 기준

출처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그림 2-2〉 서울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및 구매비중 추이

11) 2010년과 2011년 중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공사 등 서울시 본청발주 대형 건설공사가 진행

〈표 2-3〉 16개 시·도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경기	2,386,120	95.5	2,539,136	88.8	2,215,209	79.5	4,950,111	88.7	3,403,382	73.4	3,405,975	80.2
전남	1,771,001	98.8	1,616,744	92.6	1,287,714	64.1	3,035,843	86.9	2,694,849	95.0	2,573,072	94.6
경남	1,500,105	96.3	1,959,736	96.7	1,644,248	39.5	3,313,223	93.2	2,414,980	79.3	2,412,518	87.2
경북	1,460,663	94.9	1,359,565	91.9	1,429,146	68.4	3,116,235	88.5	2,368,140	81.7	2,347,170	86.2
서울	1,547,739	98.1	2,226,181	89.2	1,712,401	83.1	3,593,297	91.2	2,516,210	65.2	2,013,323	65.6
강원	1,477,527	95.4	1,921,171	93.8	1,468,627	71.8	2,064,918	96.3	1,908,457	90.7	1,854,307	90.0
전북	1,489,508	98.5	1,477,053	91.4	920,188	77.4	1,843,303	96.0	1,574,503	93.8	1,654,309	92.2
충남	1,161,470	98.7	1,424,072	95.0	1,103,768	71.6	2,226,526	94.8	1,855,248	87.7	1,647,517	85.8
충북	821,850	95.7	1,273,890	96.5	889,781	76.6	1,506,934	95.4	1,258,635	90.0	1,022,520	87.1
부산	768,214	96.2	860,446	91.6	523,486	81.9	992,660	96.7	761,881	77.5	800,769	81.3
인천	534,583	83.6	278,344	86.4	328,618	40.5	1,410,325	92.1	756,919	68.2	667,237	59.5
제주	275,512	98.3	414,343	94.9	420,261	80.5	881,797	94.9	638,501	83.4	660,654	87.3
대구	264,275	88.6	255,299	76.8	277,800	85.5	548,814	95.5	520,899	71.8	530,767	64.3
울산	226,149	90.9	453,294	88.3	295,032	72.9	531,968	92.8	396,552	83.5	393,003	85.4
대전	266,379	94.0	335,499	88.4	293,902	85.5	457,044	96.2	331,588	84.7	320,907	88.0
광주	149,062	95.1	163,347	88.5	165,621	84.1	310,774	99.3	380,153	91.1	289,228	77.5

주 : 1. 경상가격 기준이고, 시·도별 본청 기준임

2. 비중은 공공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비중

출처 : 공공구매 종합정보시스템

제2절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1.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현황¹²⁾

- 2012년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액은 3조 5,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
 - －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따라 2012년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희망기업제품의 구매 비중도 전년 대비 7.0%p나 확대
 - 서울시의 총 구매액 중 희망기업제품 구매액 비중 : 2011년 64.5% → 2012년 71.5%
 - 2012년 서울시 총 구매액은 4조 9,7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
 - －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는 금액뿐만 아니라 구매건수도 전년 대비 20%나 증가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공공구매 건수 : 2011년 190,844건 → 2012년 229,013건

〈표 2-4〉 서울시의 총 구매액과 희망기업제품의 구매액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총 구매액		희망기업제품 구매액					
			중점관리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소기업	기타 기업
			중증 장애인시설	사회적 기업				
2011	46,084	29,727	141	116	315	-	-	29,155
2012	49,754	35,552	250	450	177	3,976	7,740	22,959

주 : 1) 총 구매액은 희망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총 공공구매액을 의미

2) 중점관리기업 중 하나인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수치에 포함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12) 제2절의 서울시 공공구매 실적은 서울시 내부자료로 시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자료를 합한 것으로 본청 기준으로 작성된 공공구매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와 차이가 발생

- 특히 서울시 희망기업 중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중점 관리기업의 제품 구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
 - － 2012년 중점관리기업의 제품 구매액은 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4% 증가
 - － 중점관리기업 중에서는 자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이 2012년 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9% 증가했고, 중증장애인시설제품 구매액도 2012년 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3% 증가
 - 반면, 기타 희망기업 중 하나인 장애인기업과 기타기업의 2012년 제품 구매액은 각각 177억원, 2조 2,959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3.8%, 21.3% 감소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를 기관별로 보면, 시 본청, 자치구는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투자출연기관은 다소 미흡
 - － 2012년 서울시 본청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액은 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9.7배 늘어나 관련 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2012년 서울시 본청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은 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4배, 중증장애인시설제품 구매액은 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9배 증가
 - － 2012년 서울시 자치구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액은 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배 증가
 - 2012년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은 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배, 중증장애인시설제품 구매액은 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
 - － 201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액은 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
 - 201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은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배, 중증장애인시설제품 구매액은 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

- 투자출연기관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 증가세가 서울시 본청이나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 때문
 - SH공사는 자재 중 구매 가능한 품목이 신발장 등으로 한정적이고, 용역도 건설폐기물 처리, 설계 등 전문 용역이 대부분으로 중점관리기업을 비롯한 희망기업제품 구매에 한계
 - 서울의료원도 전체 재료비 중 희망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의료장비 및 약품 등의 예산이 51%를 차지하는 등 업무 특성상 희망기업제품 구매에 어려움 발생

〈표 2-5〉 서울시의 기관별 희망기업제품 구매액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계	희망기업					
			중점관리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소기업	기타 기업
			중증 장애인시설	사회적 기업				
2011	계	29,727	141	116	315	0	0	29,155
	시	11,738	10	5	34	0	0	11,689
	자치구	8,396	72	69	26	0	0	8,229
	투자출연기관	9,593	59	42	255	0	0	9,237
2012	계	35,552	250	450	177	3,976	7,740	22,959
	시	15,938	49	97	86	1,235	3,227	11,244
	자치구	10,128	125	278	72	969	3,012	5,672
	투자출연기관	9,486	76	75	19	1,772	1,501	6,043

주 :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에 포함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2. 희망기업제품의 유형별 계약건수와 구매금액

1) 계약유형별 계약건수¹³⁾

- 서울시의 공공구매 계약건수를 보면, 희망기업과의 계약이 총 계약 건수의 97%에 달함
 - 2012년 서울시의 공공구매 계약건수는 총 34,691건으로 이중 97%인 33,691건이 희망기업과의 계약건수이며, 대기업과의 계약건수는 3%인 1,000건을 차지
 - 희망기업 유형별로는 기타 희망기업이 2012년 총 계약건수의 95.6%인 33,165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회적기업 442건(비중 1.3%), 중증 장애인시설 79건(비중 0.2%), 자활기업 5건(비중 0.01%) 등의 순
 - 2012년 중점관리기업의 계약건수는 526건으로 총 계약건수의 1.52%, 희망기업 계약건수의 1.56%를 차지

〈표 2-6〉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기업유형별 계약건수 및 비중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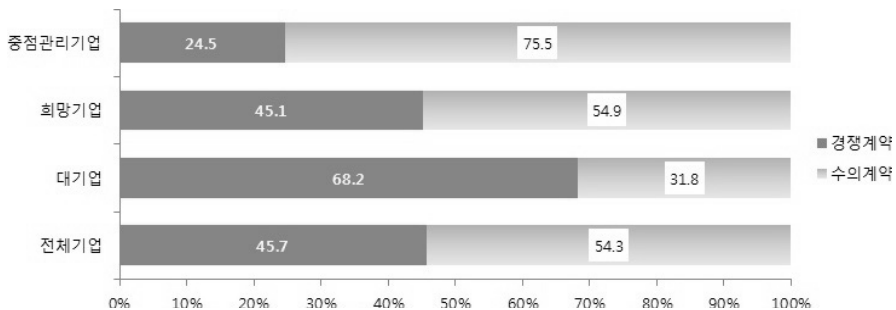
구 분	총계	희망기업					대기업
		소계	중증 장애인시설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기타 기업	
건수	34,691	33,691	79	442	5	33,165	1,000
비중	100.0	97.0	0.2	1.3	0.01	95.6	3.0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서울시 공공구매의 계약유형을 보면, 중점관리기업 등 희망기업과는 수의 계약이, 대기업과는 경쟁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 계약건수 중 54.3%(18,822건)가 수의계약이고, 45.7%(15,869건)가 경쟁계약

13) 계약유형별 건수는 투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대상이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계약된 계약건수 기준으로 시 및 자치구의 일상경비 지출 등에 의한 것은 제외

- 그러나 기업유형별로 보면, 대기업과의 계약은 68%가 경쟁계약인 반면, 희망기업 및 중점관리기업과의 계약은 각각 55%, 76%가 수의계약
 - 대기업 : 경쟁계약 682건(68.2%) 수의계약 318건(31.8%)
 - 희망기업 : 경쟁계약 15,187건(45.1%), 수의계약 18,504건(54.9%)
 - 중점관리기업 : 경쟁계약 129건(24.5%), 수의계약 397건(75.5%)¹⁴⁾
- 특히 중점관리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를 확대하고자 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2-3〉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기업유형별 계약유형 건수비율

- 서울시 공공구매의 계약유형 및 구매유형별 계약건수를 보면,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물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구매유형은 물품이 5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용역 22.6%, 공사 19.0%의 순
 - 계약유형별로도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에서 물품이 각각 52.4%, 6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4) 2012년 중점관리기업의 수의계약을 보다 자세히 보면, 사회적기업 353건, 중증장애인시설 41건, 자활기업 3건

〈표 2-7〉 2012년 서울시의 계약유형 및 구매유형별 계약건수

(단위 : 건, %)

구 분	전체	구매유형		
		물품	공사	용역
경쟁계약	15,869 (100,0)	10,396 (65,5)	2,638 (16,6)	2,835 (17,9)
수의계약	18,822 (100,0)	9,860 (52,4)	3,970 (21,1)	4,992 (26,5)
계	34,691 (100,0)	20,256 (58,4)	6,608 (19,0)	7,827 (22,6)

주 : ()안은 각 계약에서 구매유형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 특히,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은 중점관리기업과의 수의계약에서 물품 구매 비중이 2012년 약 60%로 여타 기업유형에 비해 높게 발생
-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의 경우 전체기업의 물품구매 비중은 52.4%이고, 대기업의 물품구매 비중은 46.5%에 불과

〈표 2-8〉 2012년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의 기업유형 및 구매유형별 계약건수

(단위 : 건, %)

구 분	전체	희망기업	중점관리기업	대기업
물품	9,860 (52,4)	9,712 (52,5)	238 (59,9)	148 (46,5)
공사	3,970 (21,1)	3,949 (21,3)	61 (15,4)	21 (6,6)
용역	4,992 (26,5)	4,843 (26,2)	98 (24,7)	149 (46,9)
계	18,822 (100,0)	18,504 (100,0)	397 (100,0)	318 (100,0)

주 : ()안은 각 계약에서 구매유형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2) 구매유형별 구매금액과 주요 구매품목

- 서울시 공공구매의 구매유형별 구매금액을 보면, 계약건수와 달리 물품구매보다 주로 공사비중이 큰 편
 - － 2012년 서울시의 구매유형별 구매금액을 보면, 공사가 3조 1,279억원으로 계약금액(4조 7,644억원)의 65.7%에 달하는 반면, 용역과 물품은 각각 계약금액의 18.2%, 16.2%에 불과
 - 또한 일반지출까지 포함한 총구매액(4조 9,754억원)에서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62.9%로 가장 큰 편
 - － 이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건수가 작아도 금액이 큰 반면, 물품구매는 계약건수가 많아도 소액구매 위주이기 때문

〈표 2-9〉 2012년 서울시 구매유형별 구매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계약현황			일반지출 (일상경비 등)
		물품	공사	용역	
합 계	49,754	7,701	31,279	8,664	2,110
시	20,209	2,713	13,541	3,450	505
자치구	15,314	3,505	8,085	2,626	1,098
투자출연기관	14,231	1,483	9,653	2,588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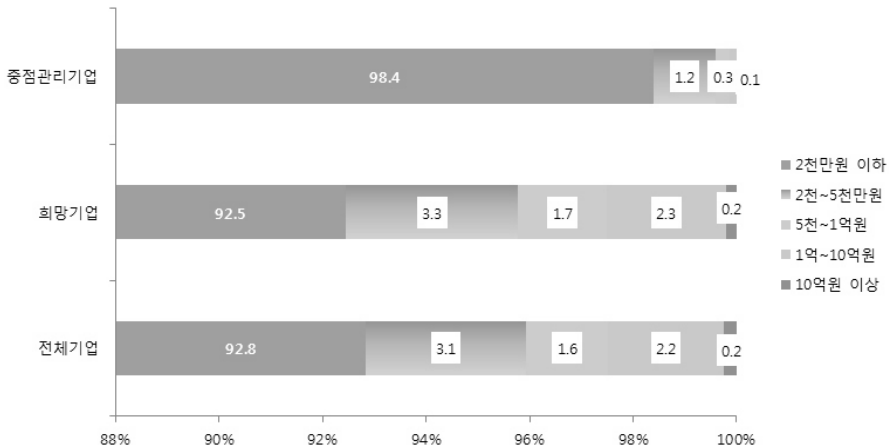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서울시 공공구매건수의 90% 이상은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이고, 특히 중점관리기업의 소액구매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 2012년 총 공공구매건수의 92.8%가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¹⁵⁾
 - 반면, 총 공공구매액 중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액 비중은 8.7%¹⁶⁾

15) 2012년 서울시 총 공공구매건수는 287,415건이며, 이중 2천만원 이하 구매건수는 266,801건

16) 2012년 서울시 총 공공구매액은 4조 9,754억원이며, 이중 2천만원 이하 구매가 4,315억원

- 희망기업의 구매액별 구매건수와 구매액 분포도 전체기업과 유사
 - 2012년 희망기업제품 구매건수의 92.5%가 2천만원 이하 소액구매이
나¹⁷⁾, 2천만원 이하 구매액은 총 구매액의 11.1% 수준¹⁸⁾
- 이에 비해 중점관리기업의 구매액별 구매건수 및 구매액 분포는 전체
기업 및 희망기업에 비해 소액구매에 더 집중된 형태
 - 2012년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건수의 98.4%가 2천만원 이하 소액구
매이고¹⁹⁾, 2천만원 이하 구매액 비중도 56.3%로 매우 높음²⁰⁾
 - 반면, 1억원 이상 구매건수와 구매금액은 각각 42건, 89억원으로 전체
구매건수 및 구매금액의 0.1%, 12.7%에 불과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2-4〉 2012년 서울시 공공구매의 구매금액별 구매건수

17) 2012년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건수는 229,013건이며, 이중 2천만원 이하가 211,729건

18) 2012년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액은 3조 5,552억원, 이중 2천만원 이하 구매가 3,933억원

19)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건수는 34,289건이며, 이중 2천만원 이하가 33,739건

20)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액은 700억원, 이중 2천만원 이하 구매가 394억원

- 이처럼 중점관리기업의 공공구매 참여가 2천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집중된 것은 거래품목이 매우 적고, 거래도 금액이 큰 공사보다 주로 소액 위주인 물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 －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 구매품목은 총 118개로 총 거래품목(1,779개)의 6.6% 수준이고, 대부분 물품에 집중
 - 2012년 중점관리기업의 거래품목 유형 : 물품 78%(92개), 용역 20.3%(24개), 공사 1.7%(2개)
 - － 또한 중점관리기업의 주요 생산품목²¹⁾은 인쇄물, 식료품, 청소·방역 등이나, 2012년 본청 및 사업소에서 구매한 금액기준 상위 품목은 레미콘, 토목 등 중점관리기업을 통해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 다수
 - 물품 : 레미콘, 시멘트, 정수장비, 오수처리장비, 신호등, 아스팔트 등
 - 공사 : 토목, 건축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등
 - 용역 :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등을 제외하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등은 전문성이 요구

〈표 2-10〉 2012년 서울시 거래기업의 거래품목수

(단위 : 개)

	계	물품	공사	용역
전체구매품목	1,779	1,665	38	76
중점관리기업	118	92	2	24

주 : 조달청의 물품분류기준(8자리)이며 일부 품목(문구, 의약품 등)은 4자리로 구분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21) 취급업체수 기준으로 주요 생산품목을 보면, 중증장애인시설은 인쇄물(각종 홍보물, 현수막 등), 식료품(제과제빵, 떡, 차류 등), 피복류(단체복, 모자, 장갑 등), 전기용품(LED등, 배전반, 자동제어장치), 비누·세제 등이고, 사회적기업은 교육서비스(체험서비스, 음악치료 등), 식료품(제과제빵, 도시락, 떡, 커피 등), 전시공연·기획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사간병, 보육, 노인요양 등), 인쇄물(각종 홍보물, 현수막 등) 등이며, 자활기업은 청소·방역, 식료품(도시락, 떡, 제과제빵 등), 인테리어 및 소규모 건축, 재생자전거 납품·수리, 조경·화훼류, 기념품·행사용품 등임

-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와 거래한 중점관리기업의 주요 품목은 주로 인쇄·홍보물, 행사·공연 등에 집중
 - － 인쇄·홍보물과 복사용지는 100%, 청소는 97.9%, 사무용품은 95.8%, 식료품은 80%가 중점관리기업을 포함한 희망기업에서 구매
 - －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의 인쇄·홍보물 구매실적은 23억원, 행사·공연 구매실적은 21억원, 복사용지 구매실적은 9억원 정도
 - 중점관리기업 이외의 기타 희망기업에서는 청소, 인쇄·홍보물, 식료품, 사무용품 등의 구매 비중이 높은 편

〈표 2-11〉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 주요품목별 구매실적

(단위 : 억원)

품목	인쇄 홍보물	복사용지	식료품	화장지	사무용품	비누세제	청소	간병	행사공연	실내건축
중점 관리기업	23	9	5	4	4	0.3	0	0.8	21	0.8
기타 희망기업	66	3	19	2	19	3	236	15	91	190
대기업· 공기업	0	0	6	0.04	1	0.02	5	3	18	36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가 중점관리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구매품목을 다양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
 - － 서울시는 2011년 62개에 불과했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품목을 2012년 92개까지 확대
 - 특히 물품구매는 중점관리기업의 취급품목이 다양해 2012년에는 전년도 품목수의 1.4배인 72개까지 증가

- 향후 중점관리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서는 구매품목을 더 다양화할 필요
- 주력품목 중 하나인 식료품,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을 중심으로 구매품목을 확대
- 또한 공사 및 용역 등에서 중점관리기업의 구매품목을 넓혀갈 필요

〈표 2-12〉 2012년 서울시의 구매품목 다양화 내역

구분	2011년	2012년	2012년 신규 구매품목
물품	53	72	경계석, 교육용CD, 전광판, 블라인드, 필름 등
공사	0	2	인테리어, 조경 식재
용역	9	18	디자인, 영상물제작, 홍보, 인력파견 등
합계	62	92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제3장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경제적 효과

제3절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적 효과

제4절 구매확대 관련 기타 사항

제 3 장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1절 조사개요²²⁾

- 조사목적 :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희망기업 배려를 위한 지원방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희망기업제품의 공공구매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해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13년 3월 12일 ~ 3월 26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CATI)
- 조사대상 : 서울시 희망기업 중 중점관리대상 기업
- 조사내용 : 공공구매 관련 24개 문항
 - － 기업현황 : 회사유형, 근로자수 등
 - － 희망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분야 : 희망기업 지원방안 인지도, 제품 구매 및 매출증대를 위한 희망기업 지원방안 효과 평가, 희망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
 -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 분야 : 매출액 및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매출액 증가 품목, 구매 확대정책에 따른 수익성 및 고용개선 효과 등

22) 이 조사는 중점관리기업 중심으로 제품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고, 업체 조사는 전문 조사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가 대행

- － 희망기업 지원방안 과급력 : 구매 확대정책의 기업 도움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공무원과 일반시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

〈표 3-1〉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특성

구 분		업체수(개)	비율(%)
		406	100.0
기업유형(소분류)	사회적기업	257	63.3
	자활기업	35	8.6
	중증장애인시설	130	32.0
	기타기업	13	3.2
기업유형(대분류)	중점관리기업	393	96.8
	기타기업	13	3.2
종업원 수	1~4명	63	15.5
	5~9명	121	29.8
	10~29명	140	34.5
	30~49명	53	13.1
	50명 이상	25	6.2
	무응답	4	1.0
서울시 거래 경험	유	297	73.2
	무	109	26.8
2012년 매출액	1억원 미만	45	15.2
	1~2억원 미만	48	16.2
	2~3억원 미만	40	13.5
	3~10억원 미만	92	31.0
	10억원 이상	66	22.2
	무응답	6	2.0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53.5
	1억원 이상	96	32.3
	무응답	42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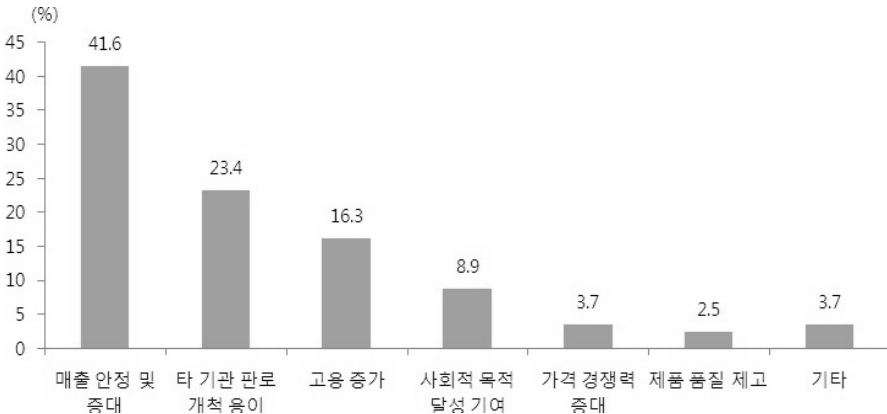
주 : 전체 표본크기와 기업유형별 표본크기의 합은 기업유형의 중복체코로 인해 불일치

제2절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경제적 효과

1.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 효과

1) 매출액 증가 효과

- 희망기업은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매출증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식
 - － 조사대상 업체 중 65.0%가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²³⁾
 - 조사대상 업체 중 41.6%가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기업의 고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매출 안정 및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인식
 - 또한 조사대상 업체 중 23.4%는 공공기관과의 거래로 인한 신뢰축적으로 타 기관 판로 개척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



주 : 표본크기는 406개

〈그림 3-1〉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기업도움 측면

- 23) 또한 조사대상 업체의 16.3%는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매출증대로 인한 고용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이밖에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달성 기여, 거래량 확보를 통한 생산원가 감소로 인한 가격경쟁력 증대, 납품수준을 맞추기 위한 제품 품질 제고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유형별로 보아도 기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매출안정 및 증대와 매출증대를 통한 타 기관 판로개척으로 나타남²⁴⁾
-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모두 매출안정 및 증대가 40%대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타 기관 판로개척 용이도 20%대의 응답비율을 보임
- 다만, 중증장애인시설은 고용증가 효과에 대한 응답비율이, 자활기업은 사회적 목적 달성 기여 효과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2〉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 확대정책의 기업에 대한 영향(기업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표본 크기	매출 안정 및 증대	타 기관 판로개척 용이	고용 증가	사회적 목적 달성 기여	가격 경쟁력 증대	제품 품질 제고	기타
전 체	406	41.6	23.4	16.3	8.9	3.7	2.5	3.7
사회적기업	257	40.1	24.5	14.8	10.1	3.9	3.1	3.5
자활기업	35	42.9	25.7	8.6	17.1	2.9	0.0	2.9
중증장애인시설	130	46.9	21.5	20.8	5.4	2.3	1.5	1.5
기타기업	13	23.1	15.4	30.8	0.0	7.7	0.0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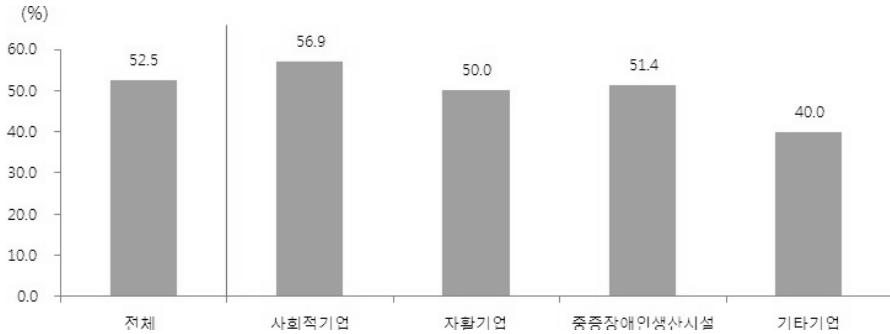
주 : 기업유형별 표본크기의 합은 기업유형의 중복체크로 전체 표본크기의 합과 상이(이하 동일)

- 실제로 서울시와 거래경험이 있는 297개 희망기업 중 52.5%가 2012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
-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에서 매출액 증가업체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의 기업유형에서 매출액 증가업체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²⁵⁾

24)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사자 규모별로 보아도 결과는 유사(<부록 표 1> 참조)

25) 종사자 규모별로 매출액 증가업체 비중이 높은 것은 30~49명 규모의 업체와 10~29명 규모의 업체로 각각 59.6%, 54.7%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부록 표 2> 참조)

-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증가업체 비중은 56.9%로 전체 평균을 4.5%p 상회
- 매출액 증가업체 비중은 사회적기업(56.9%) > 중증장애인시설(51.4%) > 자활기업(50.0%) > 기타기업(40.0%) 등의 순



〈그림 3-2〉 2012년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매출액 증가업체 비중

- 조사대상 희망기업의 2012년 평균 매출액은 약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원 증가
 - 조사대상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평균 매출액은 기타기업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
 - 기업유형별 평균 매출액 : 기타기업(14.0억원) > 중증장애인시설(11.2억원) > 사회적기업(0.7억원) > 자활기업(0.4억원) 순
 - 조사대상 업체 중 매출액 증가²⁶⁾은 중증장애인시설(1.6억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회적기업(1.2억원)과 자활기업(0.6억원) 순
 - 기타기업은 중점관리기업과 달리 전년대비 매출액이 0.8억원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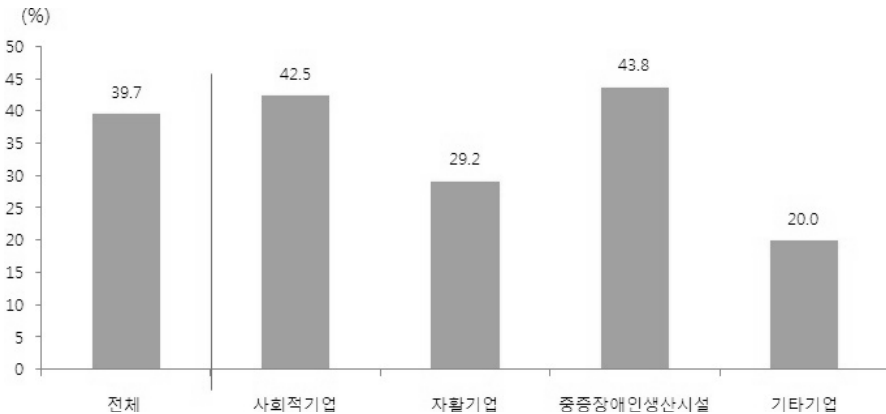
26) 종사자 규모별로 매출액 증감액을 보면, 매출액은 30~49명 규모의 업체와 10~29명 규모의 업체에서 각각 2.4억원, 1.9억원 늘어나는 등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5~9명 규모 업체와 50명 이상 규모 업체에서는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부록 표 2> 참조)

〈표 3-3〉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매출액 규모와 증감액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표본크기	평균 매출액		매출액 증감액
		2011년	2012년	
전체	297	683	784	101
사회적기업	181	598	715	117
자활기업	24	322	378	56
중증장애인시설	105	961	1,122	161
기타기업	10	1,479	1,402	-77

- 서울시와 거래경험이 있는 297개 희망기업 중 39.7%가 서울시와의 거래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 － 기업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시설과 사회적기업에서 거래금액 증가업체가 많고, 자활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조²⁷⁾
 - 중증장애인시설과 사회적기업의 거래금액 증가업체 비중은 각각 43.8%, 42.5%인 반면, 자활기업의 거래금액 증가업체 비중은 20%대



〈그림 3-3〉 2012년 희망기업 중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업체 비중(기업유형별)

27) 종사자 규모별로 본 거래금액 증가업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30~49명 규모 업체(48.9%)와 10~29명 규모 업체(40.6%)에서 높게 나타남(<부록 표 3> 참조)

- 조사대상 업체의 서울시와 평균 거래금액은 2012년 약 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0.5억원 증가
 - － 조사대상 업체의 기업유형별 평균 거래금액은 매출액 수준과 유사하게 기타기업과 중증장애인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서울시와의 평균 거래금액 : 기타기업(7.8억원) > 중증장애인시설(7.5억원) > 사회적기업(2.3억원) > 자활기업(2.1억원) 순
 - － 조사대상 업체의 거래금액 증가액²⁸⁾도 중증장애인시설(1.4억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회적기업(0.6억원), 자활기업(0.3억원) 등의 순

〈표 3-4〉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거래금액 규모와 증감액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표본크기	평균 거래금액		거래금액 증감액
		2011년	2012년	
전체	297	334	379	45
사회적기업	181	175	230	55
자활기업	24	178	208	30
중증장애인시설	105	611	751	140
기타기업	10	762	778	16

- 서울시의 희망기업 구매확대 정책 이후 거래금액이 늘어난 품목은 교육, 문화예술, 사무용품 등 다양
 - － 거래금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강의, 교구재, 교육기획서비스 등의 교육분야와 공연단, 디자인, 문화행사기획 등의 문화예술 분야 등
 - － 서울시와의 거래금액이 증가한 업체의 품목별 평균 증가율은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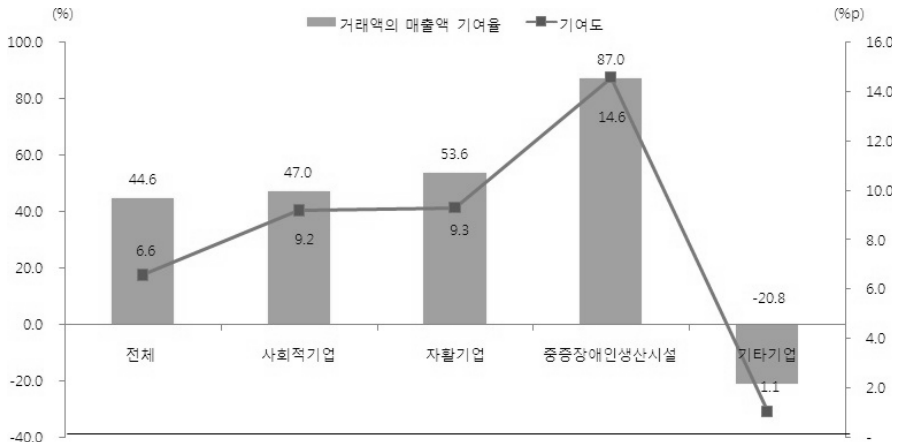
28) 종사자 규모별로 본 거래금액 증감액은 규모가 커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즉, 50명 이상(2.1억원) > 30~49명(1.6억원) > 10~29명(0.3억원) > 5~9명(4백만원) > 1~4명(1백만원) (<부록 표 3> 참조)

〈표 3-5〉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 이후 거래금액 증가품목

구 분	주요 품목
건설	건설, 집수리, 인테리어, 리모델링
교육	강의, 교구재, 교육, 교육기획서비스, 교육사업, 교육서비스, 인큐베이팅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체험학습
문화예술	공연, 공연단, 공연지원, 도예, 디자인, 목공예, 문화예술서비스, 문화행사기획, 미술품, 예술분야, 정기공연 사업개발비
배송	배송, 양곡배송사업, 우편물 발송
사무용품	봉투류, 사무용품, 서류봉투, 지류
생필품	비누,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청소용품, 화장지, 화장지 생산
서비스	서비스, 세탁서비스, 유아용품 세탁, 이벤트행사, 청소용역, 행사대행기획, 행사용품
식품	곡물납품, 김, 도시락, 도시락판매, 두부, 떡, 빵, 빵 납품, 쌀, 육포, 제과제빵, 조미김, 친환경 도시락사업, 카페운영, 커피제조, 황토소금
의류	근무복, 기념품가방, 니트, 베레모, 유니폼, 의료옷, 의료용 섬유류 소모품, 의류, 잠바, 전투복, 군용런닝, 조끼
전기	전광판, 조명
출판인쇄	명함, 복사, 신문, 인쇄, 인쇄물, 인쇄제작, 판촉물, 현수막
컴퓨터	재생 카트리지, 토너, 토너 카트리지, PC, 모니터 물품 계약
기타	거래처 확보, 광고제작, 구청 소식지, 그릇세트, 기금공무사업, 꽃, 상장케이스, 심리상담, 영업확대, 우산, 계산기, 재활용, 제조, 피보기(의료기), 지원사업

-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시와의 거래액 증가는 매출액 증가에 상당 수준 기여한 것으로 평가
 - －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경우 서울시와의 거래액 증가는 2012년 매출액 증가에 44.6% 기여
 - 2012년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매출액이 14.8% 증가하는 데 있어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는 6.6%p 기여

- 중증장애인시설의 경우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는 2012년 매출액 증가에 무려 87.0%나 기여
 - 2012년 중증장애인시설의 매출액이 16.8% 증가하는 데 있어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가 14.6%p 기여
-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거래금액 증가는 47.0% 기여
 - 2012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이 19.6% 증가하는 데 있어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가 9.2%p 증가
- 자활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거래금액 증가는 53.6% 기여
 - 2012년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17.4% 증가하는 데 있어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가 9.3%p 증가
-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기타기업의 경우 거래금액 기여율은 -20.8%로 매출액 감소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
 - 2012년 기타기업의 매출액이 5.2% 감소하였으나,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가 매출액 감소 완화에 1.1%p 기여



〈그림 3-4〉 2012년 희망기업의 매출증대에 대한 거래금액 기여율(기업유형별)

〈참고〉 매출액 증가에 대한 거래금액의 기여율 및 기여도

○ 희망기업에서 서울시와의 거래금액을 매출액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볼 경우 매출액에 대한 기여율과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 i \text{ 기업유형의 } t \text{년도 매출액 증가에 대한 거래금액 기여율}(CR_t) = \frac{\Delta S_j}{\Delta S} \times 100$$

• S 는 기업유형별 매출액, S_j 는 j 번째 증가요인($S = \sum S_j$), Δ 는 lag operator

$$- i \text{ 기업유형의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거래금액 기여도}(CD_t) = \frac{S_t - S_{t-1}}{S_{t-1}} \times CR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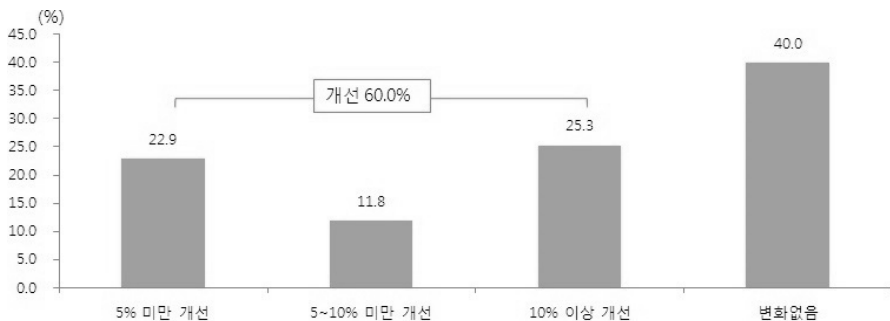
• 각 매출액 증가요인에 대한 기여도의 합은 매출액 증가율의 합과 일치

2) 수익성 개선 효과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매출증대는 상당부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매출증가로 조사업체 중 60%가 수익성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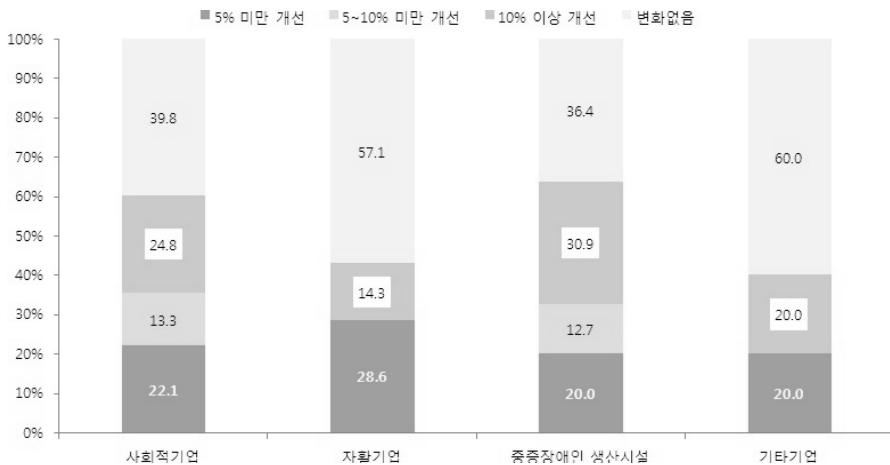
• 특히, 매출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가 10% 이상 된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도 25.3%에 달함



주 : 표본크기는 170개

〈그림 3-5〉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수익성 개선 효과

- 특히, 수익성 개선 정도를 기업유형별로 보면, 중점관리기업인 중증장애인 시설과 사회적기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²⁹⁾
 - － 중증장애인시설기업의 63.6%가 희망기업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매출 증대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 특히 중증장애인시설기업의 30.9%는 수익성이 10% 이상 개선
 - － 사회적기업의 60.2%, 자활기업의 42.9%도 희망기업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매출증대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
 - 사회적기업의 24.8%, 자활기업의 14.3%는 수익성이 10% 이상 개선
 - － 반면, 기타기업은 중점관리기업에 비해 수익성 개선 정도가 미미
 - 기타기업의 60%는 희망기업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매출증대로 수익성 개선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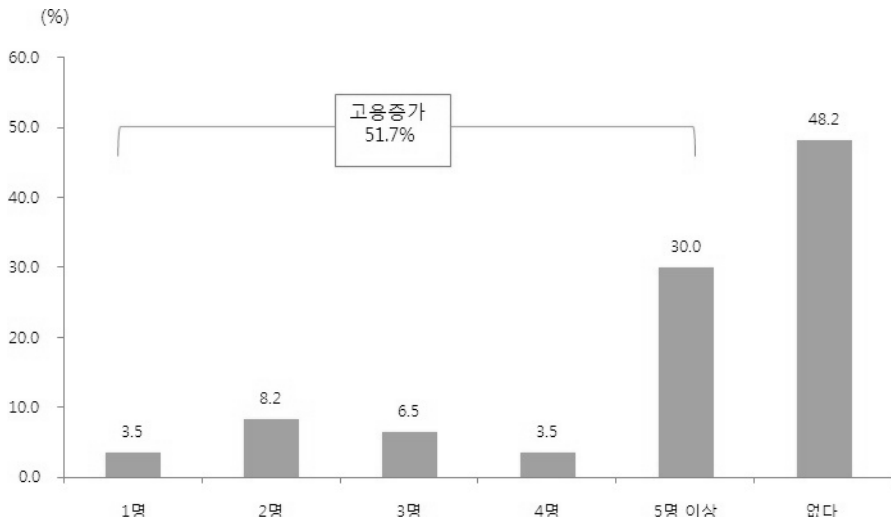


〈그림 3-6〉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수익성 개선 효과(기업유형별)

29) 종사자 규모별로 본 수익성 개선정도는 전반적으로 종사자 규모 50명 이상과 10~29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수익성 개선 업체비중이 높게 발생(<부록 표 4> 참조)

2. 고용증가 효과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으로 업체들의 고용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
 - － 희망기업 구매확대 정책 이후 매출이 증가한 업체 중 51.7%가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 5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사업체도 30.0%나 차지
 - － 이는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 관련업체 생산증가 → 매출증가 → 수익성 개선 → 고용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또한 희망기업, 특히 중점관리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 노동집약적 업종이 많아 구매확대로 인한 매출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시차 구조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판단



주 : 표본크기는 170개

〈그림 3-7〉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고용증가 효과

- 기업유형별로는 매출액, 순이익 등의 경영성과 개선이 컸던 중증장애인시설업체들의 고용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³⁰⁾
 - － 중증장애인시설은 희망기업 구매확대 정책 이후 매출이 증가한 업체 중 61.8%가 고용이 증가
 - 특히 5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업체비중도 41.8%로 중점관리기업 중 가장 많은 업체에서 고용이 확대
 - － 사회적기업도 희망기업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매출증가로 고용이 늘어난 업체비중이 53.0%에 달함
 - － 반면, 자활기업은 고용증가 업체 비중이 14.2%로 상대적으로 저조

〈표 3-6〉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고용증가 효과(기업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표본 크기							고용증가	없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 체	170	3.5	8.2	6.5	3.5	30.0	51.7		48.2
사회적기업	113	3.5	9.7	8.0	3.5	28.3	53.0		46.9
자활기업	14	7.1	0.0	7.1	0.0	0.0	14.2		85.7
중증장애인시설	55	3.6	5.5	3.6	7.3	41.8	61.8		38.2
기타기업	5	0.0	20.0	0.0	0.0	40.0	60.0		40.0

30) 종사자 규모별로 본 고용증가 효과도 규모가 클수록 높음. 즉, 50명 이상(90.0%), 30~49명(65.5%) > 10~29명(58.9%) > 5~9명(37.6%) > 1~4명(23.8%) 등의 순(<부록 표 5> 참조)

3. 거시적 효과

- 서울지역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하여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의 거시적 효과를 파악
 - －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는 서울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서 나타난 산업 간 거래관계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 2005년 기준으로 작성³¹⁾
 - － 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공공구매는 대규모 토목건설 등이 거의 없는 일종의 정부소비로 볼 수 있음
 - 2012년 서울시 중점관리기업의 제품구매액은 700억원 수준
- 2012년 서울시 중점관리기업의 공공구매는 서울경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9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4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02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 －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는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전 산업에 걸쳐 9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조 7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
 - 생산유발계수는 공공구매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는 산출액 단위를 의미³²⁾
 - －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는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648억원, 전국에서 749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공공구매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의미³³⁾

31) 현재 전국 산업연관표는 2010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지역 산업연관표는 2005년 기준만 제공 가능

32) $(I - A^d)^{-1}$ 형 생산유발계수로 단위행렬 I 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 산업부문의 직접생산효과이고, A^d 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으로 1차 생산과급효과를 의미

33) $\hat{A}^v(I - A^d)^{-1}$ 형 부가가치유발계수로 $(I - A^d)^{-1}Y^d$ 형 생산유발계수표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hat{A}^v$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의미

- － 한편, 2012년 서울시의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증가는 서울경제에서 1,022명, 전국적으로는 1,160명의 고용을 유발
- 노동유발계수는 공공구매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물 한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즉 노동계수³⁴⁾뿐만 아니라 생산과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³⁵⁾

〈표 3-7〉 2012년 서울시 중점관리기업제품 구매액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서 울	925.6	648.2	1022.0
전 국	1072.0	748.8	1160.9

주 : 2005년 서울지역 산업연관표 기준

제3절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적 효과

1. 타 기관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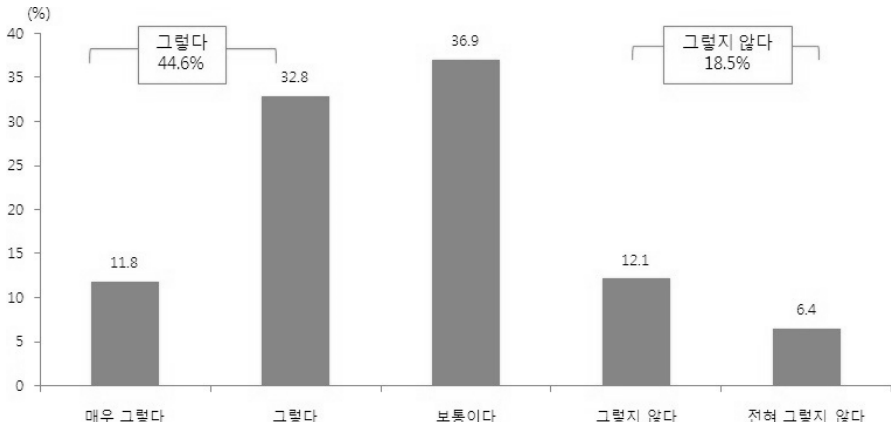
- 기업들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희망기업제품 구매가 타 기관 조달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업체비중이 44.6%(5점 척도 기준 3.32점)³⁶⁾

34) 노동계수란 노동량을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투입된 총 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생산성과 역수 관계

35) 최종수요와 총산출액 간의 수요방정식인 $X = (I - A^d)^{-1} Y^d$ 의 양변에 노동계수의 대각행렬 ($\hat{l} = L/X$)을 곱하면 $L = \hat{l}(I - A^d)^{-1} Y^d$ 가 성립하며, 여기서 $\hat{l}(I - A^d)^{-1}$ 가 노동유발계수

36) 5점 척도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로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평균을 구한 것임

- 반면,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8.5%에 불과
- 기업들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서울시의 구매확대 정책 시행이 파급적으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³⁷⁾
- 또한 정부기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구매 관련 문의가 늘어나거나 정부부처 및 다른 지자체의 구매 정책이 확대·변화된 점도 이유



주 : 표본크기는 40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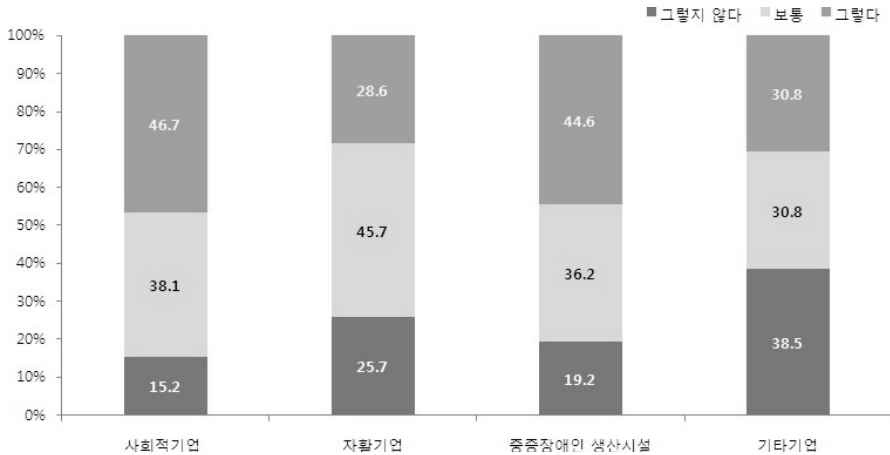
〈그림 3-8〉 서울시 희망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영향

- 기업유형별로는³⁸⁾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시설이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 타 기관 조달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업체비중이 사회적기업은 46.7%(5점 척도 기준 3.39점), 중증장애인시설은 44.6%(5점 척도 기준 3.30점)

37) <부록 표 7> 참조

38) 종사자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부록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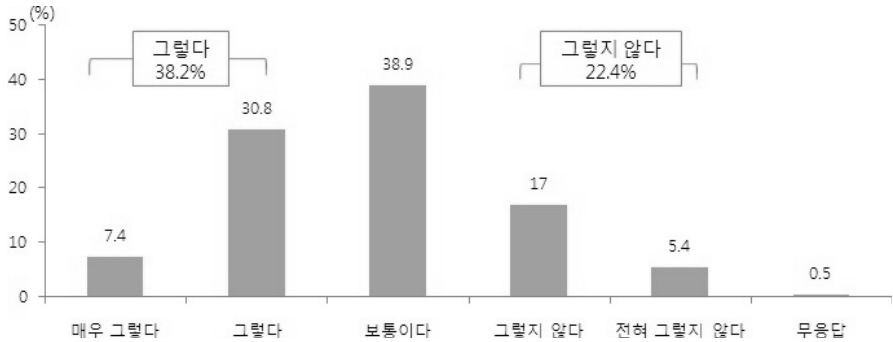
- － 반면, 자활기업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업체비중이 28.6%(5점 척도 기준 2.91점)로 다소 부정적 평가



〈그림 3-9〉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미친 영향(기업유형별)

2. 공무원 및 시민 인식에 대한 영향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인식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보통 수준
 -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희망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대상 기업의 38.2%(5점 척도 기준 3.18점)로 보통 수준
 - － 이는 향후 희망기업에 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희망기업의 잠재고객인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인식제고는 향후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뿐 아니라 희망기업 활력제고에도 촉매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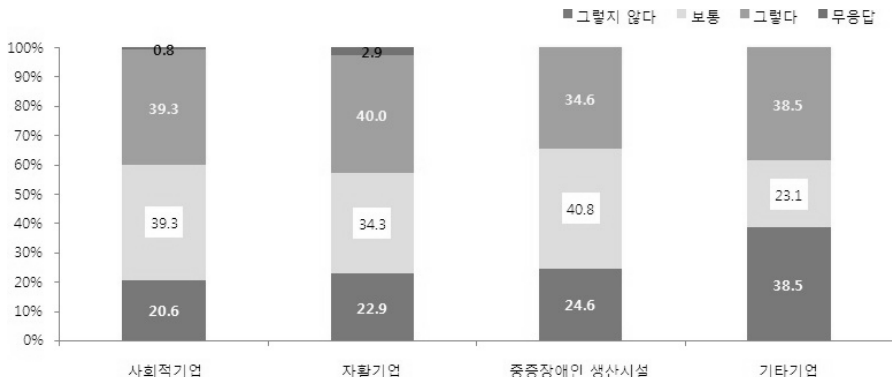


주 : 표본크기는 406개

〈그림 3-10〉 서울시 구매정책이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희망기업 인식에 미친 영향 여부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인식에 미친 긍정적 영향 수준은 기업유형별³⁹⁾로 큰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시설이 인식변화를 낮게 보고 있음

—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업체 비율 :
자활기업 40.0%, 사회적기업 39.3%, 중증장애인시설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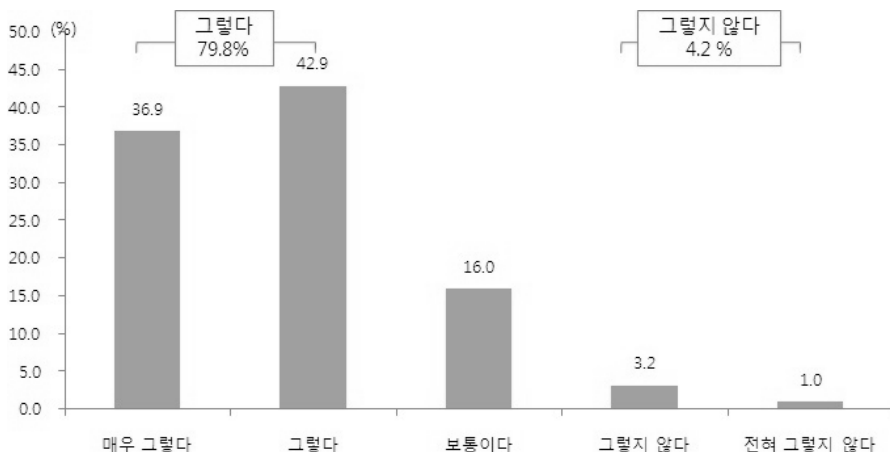


〈그림 3-11〉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인식에 미친 긍정적 변화 정도

39) 종사자 규모별로는 50명 이상과 1~4인 규모에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부록 표 8> 참조)

3. 사회적 가치 실현 의향에 대한 영향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채용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 조사대상 기업의 79.8%가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거나 활동할 계획이라고 응답
 - 5점 척도 기준으로는 4.12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
 - － 이는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화 및 고용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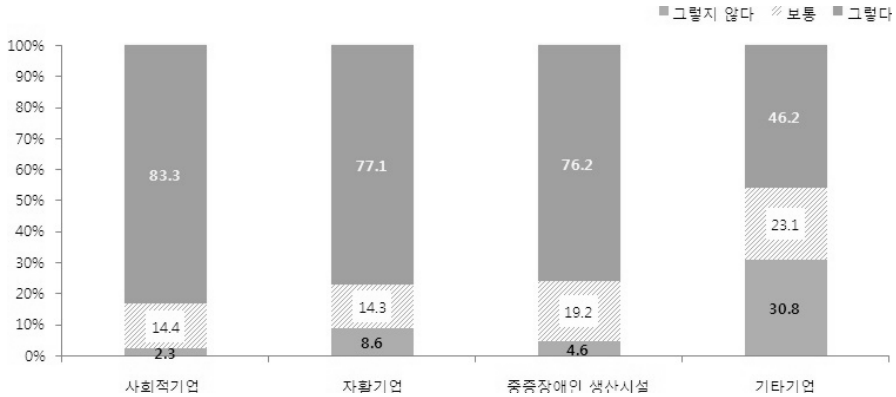
주 : 표본크기는 406개

〈그림 3-12〉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및 의향

- 기업유형별로 보면⁴⁰⁾, 중점관리기업 모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40) 종사자 규모별로 보더라도 모든 종사자 규모의 기업에서 70% 이상이 희망기업 구매확대 정책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및 의향을 보이고 있음(<부록 표 9> 참조)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시설 등에서 모두 조사업체의 75% 이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거나 활동할 계획이라고 응답
- 특히 사회적기업은 83.3%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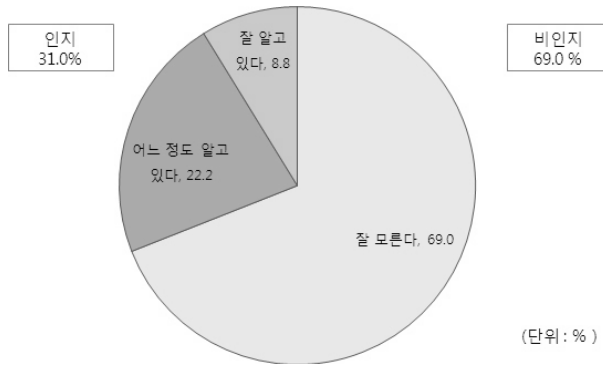


〈그림 3-13〉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및 의향

제4절 구매확대 관련 기타 사항

1. 정책인지 및 정책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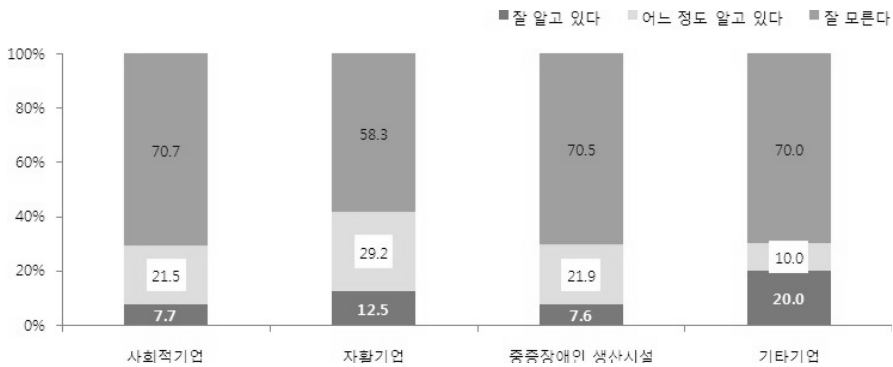
- 서울시가 추진 중인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거래업체들의 인지도는 다소 낮은 편
- 서울시와 거래하는 업체들 중 69.0%가 201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
 - 거래업체 중 31.0%만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방안에 대해 잘 아는 업체비율은 8.8%에 불과



주 : 표본크기는 297개

〈그림 3-14〉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거래업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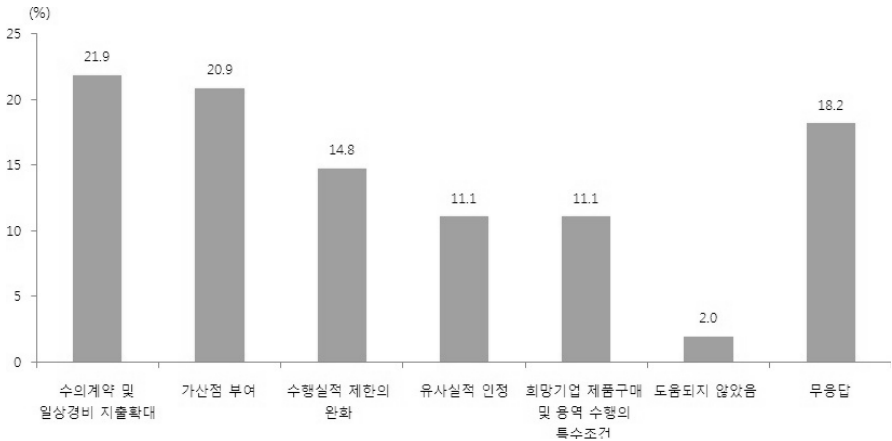
- 기업유형별로 보면⁴¹⁾, 지원방안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나 자활기업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자활기업의 정책 인지도는 41.7%에 달하는 반면,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시설의 정책 인지도는 각각 29.2%, 29.5%에 불과



〈그림 3-15〉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거래업체 인지도(기업유형별)

41)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인지도는 특히 1~4명 규모 업체(25.6%)와 10~29명 규모 업체(25.5%)가 낮은 것으로 조사(<부록 표 10> 참조)

- 서울시의 희망기업 지원방안 중 거래업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희망기업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와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로 조사
-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가 21.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희망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20.9%), 입찰 시 수행실적 제한 완화(14.8%), 유사실적 인정(11.1%), 희망기업 제품 구매 및 용역수행관련 특수조건 이행(11.1%) 등의 순



주 : 표본크기는 297개

〈그림 3-16〉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 중 도움이 된 방안

- 기업유형별⁴²⁾로도 모두 ‘희망기업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와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42) 서울시의 희망기업 지원방안 중 거래업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을 종사자 규모별로 보더라도 ‘희망기업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와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로 기업유형별 분석과 유사(<부록 표 11> 참조)

- 다만,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은 가산점 부여가, 중증장애인시설은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가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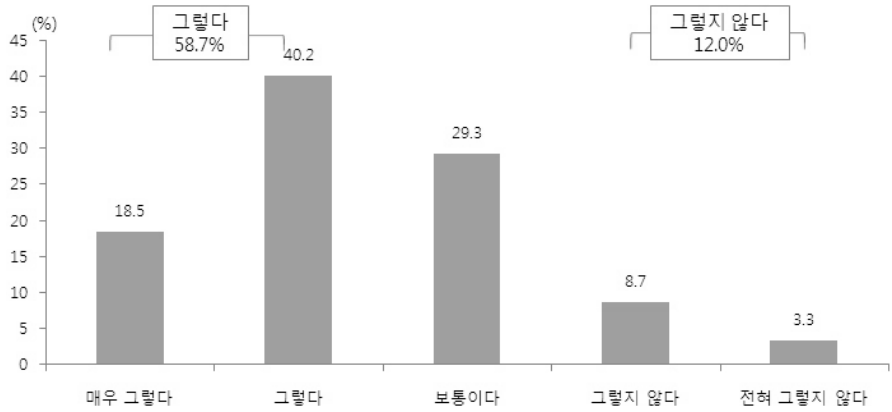
〈표 3-8〉 서울시의 희망기업 지원방안 중 도움이 된 정책(기업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표본크기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	가산점 부여	수행실적 제한의 완화	유사실적 인정	희망기업 제품구매 및 용역수행의 특수조건	도움되지 않음
전 체	297	21.9	20.9	14.8	11.1	11.1	2.0
사회적기업	181	20.4	22.7	14.9	11.6	11.0	1.1
자활기업	24	20.8	29.2	4.2	8.3	16.7	0.0
중증장애인시설	105	26.7	18.1	15.2	9.5	8.6	1.9
기타기업	10	20.0	10.0	20.0	10.0	10.0	20.0

- 이러한 서울시의 희망기업 지원방안은 제품구매 및 매출증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⁴³⁾
 - － 조사대상의 58.7%가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지원방안이 제품구매 및 매출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
 - 반면, 보통 및 효과가 없다는 업체비중은 각각 29.3%, 12.0%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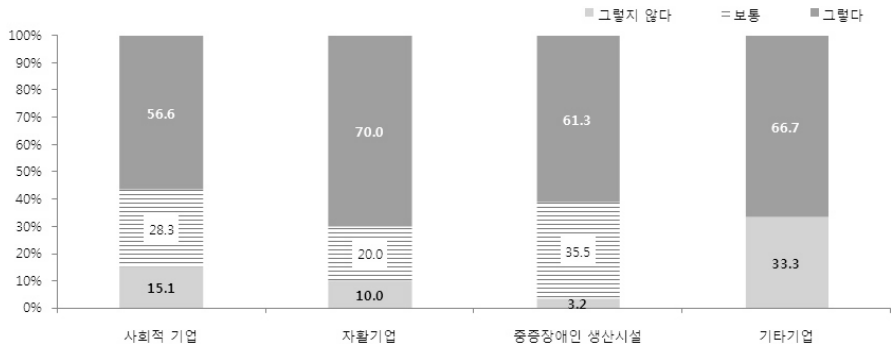
43) 개별 지원정책의 제품구매 및 매출증진에 대한 도움여부, 즉 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는 <부록 표 12>, 동일실적 이외 유사실적 인정은 <부록 표 13>,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는 <부록 표 14>, 희망기업에의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는 <부록 표 15>를 참조



주 : 표본크기는 92개

〈그림 3-17〉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의 효과 여부

- 기업유형별⁴⁴⁾로는 중점관리기업 모두 50% 이상이 희망기업 지원방안이 제품구매 및 매출증진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
- 특히 자활기업은 70%가 제품구매 및 매출증진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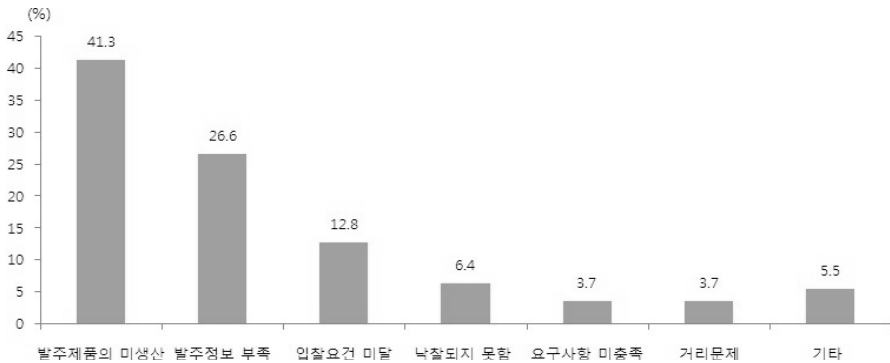


〈그림 3-18〉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의 효과 여부(기업유형별)

44) 종사자 규모별 희망기업 지원방안의 효과는 5점 척도 기준으로 50명 이상 3.71점, 10~29명 3.63점, 30~49명 3.62점, 1~4명 3.60점, 5~9명 3.54점으로 모든 규모에서 높게 발생(<부록 표 16> 참조)

2. 거래기회 제약요인

- 서울시와 거래가 없었던 희망기업들의 주된 이유는 서울시 발주제품과 일치하는 생산품목 부재
 - － 거래가 없었던 이유는 ‘서울시 발주제품과 일치하는 생산품목 부재’가 41.3%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서울시 발주에 대한 정보부재’(26.6%),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 미달’(12.8%) 등의 순



주 : 표본크기는 109개

〈그림 3-19〉 희망기업의 서울시와 거래기회 제약요인

- 특히, 서울시와의 거래가 없었던 이유는 기업유형별⁴⁵⁾로 다소 차별화
 - － 사회적기업은 ‘발주제품과 일치하는 생산품목 부재’(47.4%), ‘발주정보 부족’(28.9%), ‘입찰요건 미달’(6.6%) 등의 순
 - － 자활기업은 ‘입찰요건 미달’(36.4%), ‘발주제품과 일치하는 생산품목 부재’(18.2%), ‘발주정보 부족’(18.2%) 등의 순
 - － 중증장애인시설은 ‘발주제품과 일치하는 생산품목 부재’가 36.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발주정보 부족’(24.0%)과 ‘사업체와 발주처 간 거리 문제’(16.0%) 등의 순

45)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발주제품과 일치하는 생산품목 부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발주정보 부족’ 등이 서울시와 거래가 없었던 주요인(<부록 표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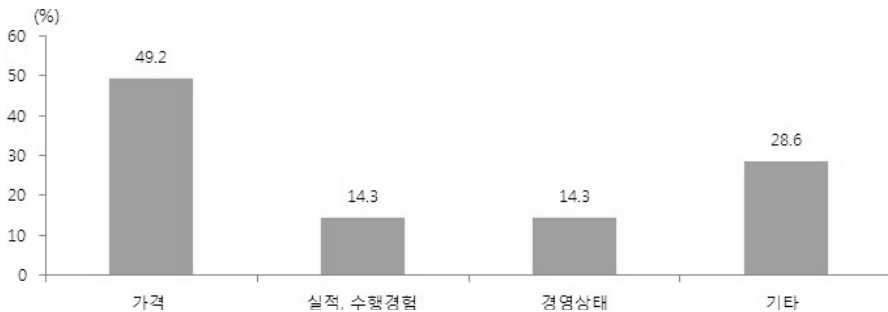
- － 따라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제품 다양화, 발주정보 제공 강화, 입찰요건 완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

〈표 3-9〉 희망기업의 서울시와 거래기회 제약요인(기업유형별)

(단위 : 개, %)

전 체	표본크기	발주제품의 미생산	발주정보 부족	입찰요건 미달	낙찰되지 못함	요구사항 미충족	거리 문제	기타
전 체	109	41,3	26,6	12,8	6,4	3,7	3,7	5,5
사회적기업	76	47,4	28,9	6,6	6,6	3,9	0,0	6,6
자활기업	11	18,2	18,2	36,4	18,2	0,0	0,0	9,1
중증장애인시설	25	36,0	24,0	12,0	4,0	8,0	16,0	0,0
기타기업	3	0,0	0,0	100,0	0,0	0,0	0,0	0,0

- 한편, 서울시와 거래경험이 없던 업체 중 입찰에 응해 낙찰되지 못한 이유는 주로 가격문제와 경영상태로 파악
- － 해당 기업의 표본수가 작기는 하지만, 해당 업체 중 49.2%가 가격문제, 14.3%가 경영상태, 14.3%는 실적 및 수행경험 등의 이유로 낙찰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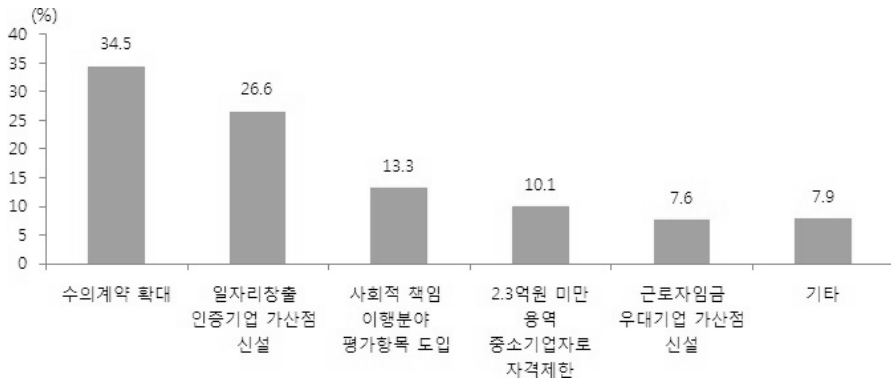


주 : 표본크기는 7개

〈그림 3-20〉 입찰에서 낙찰되지 못한 이유

3. 매출증대 및 거래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 희망기업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수의계약 확대’,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에 대한 가산점 신설’ 등이 시급하다고 인식
 - － 조사대상 업체의 34.5%가 ‘수의계약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그다음은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에 대한 가산점 신설’(26.6%),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의 평가항목 도입’(13.3%) 등의 순
 - ‘수의계약 확대’는 서울시의 희망기업 지원방안 중 거래업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분야이나, 향후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



주 : 표본크기는 406개

〈그림 3-21〉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 － 기업유형별⁴⁶⁾로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시설 모두 ‘수의계약 확대’와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에 대한 가산점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

46) 종사자 규모별로도 30~49명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모에서 ‘수의계약 확대’가 최우선 개선 사항으로 희망(<부록 표 18> 참조)

- 다만, 이외에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시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의 평가항목 도입’ 의견이 많은 반면, 자활기업은 ‘2.3억원 미만 용역입찰의 중소기업자로의 자격제한’ 의견이 많은 것이 특징

〈표 3-10〉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기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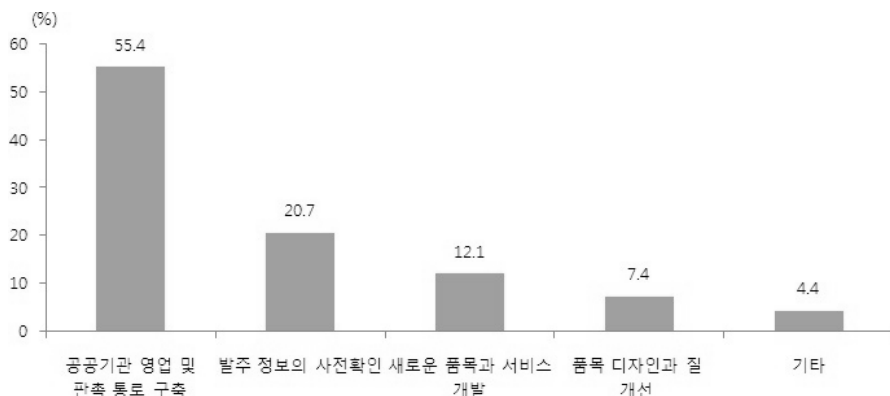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 분	표본크기	수계약 확대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가산점 신설	사회적 책임 이행분야 평가항목 도입	2.3억원 미만 용역 중소기업자로의 자격제한	근로자임금 우대기업 가산점 신설	기타
전 체	406	34.5	26.6	13.3	10.1	7.6	7.9
사회적기업	257	30.4	29.2	14.8	11.7	7.0	7.0
자활기업	35	31.4	25.7	5.7	8.6	8.6	20.0
중증장애인시설	130	47.7	21.5	10.0	5.4	8.5	6.9
기타기업	13	23.1	30.8	15.4	15.4	7.7	7.7

- 또한 희망기업들은 서울시와의 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영업 및 판촉 통로 구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
 - － 거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공공기관 영업 및 판촉 통로 구축’이 55.4%로 가장 높음
 - 그다음은 ‘서울시 발주정보의 사전 확인’(20.7%), ‘공공기관 요구에 따른 새로운 품목과 서비스 개발’(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기업유형별⁴⁷⁾로는 모든 유형에서 ‘공공기관 영업 및 판촉통로 구축’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크고, 자활기업의 경우 ‘발주 정보의 사전확인’에 대한 니즈도 상대적으로 높음

47)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서울시와의 거래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공공기관 영업 및 판촉통로 구축’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발생(<부록 표 19> 참조)

- － 전반적으로 볼 때 희망기업들은 서울시와의 거래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망 구축과 발주정보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판단



주 : 표본크기는 406개

〈그림 3-22〉 서울시와 거래확대를 위한 사업체의 개선사항

〈표 3-11〉 사업체 유형별 서울시와 거래확대를 위한 사업체의 개선사항

(단위 : 개, %)

구 분	표본크기	공공기관 영업 및 판촉 통로 구축	발주 정보 사전확인	새로운 품목과 서비스 개발	품목 디자인과 질 개선	기타
전 체	406	55,4	20,7	12,1	7,4	4,4
사회적기업	257	52,5	23,7	12,5	6,2	5,1
자활기업	35	42,9	31,4	11,4	11,4	2,9
중증장애인시설	130	63,8	16,2	10,0	6,9	3,1
기타기업	13	53,8	7,7	23,1	7,7	7,7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종합판단

제2절 향후 정책방향

제 4 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종합판단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아직 시행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기업 매출증대에 상당 수준 기여
 - 조사대상 전체 업체는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가 2012년 매출액 증가에 44.6% 기여
 - 특히 중증장애인시설은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가가 2012년 매출액 증가에 87.0%나 기여할 정도
 - － 또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업체들의 매출증대가 상당부분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
 - 조사대상 전체 업체의 60%가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매출증가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거둠
 - 기업유형별로는 매출증대 효과가 큰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게 발생

- 특히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도 큰 편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 이후 매출이 증가한 업체 중 51.7%가 고용 증가
 - 기업유형별로는 매출증대 및 순이익 개선 효과가 큰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시설의 고용증대 효과가 큼
- 이는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 관련업체 생산증가 → 매출 증가 → 수익성 개선 → 고용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
 - 이는 희망기업 중 중점관리기업이 대부분 노동집약적 업종인데다가,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매출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표 4-1〉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단위 : 기여율, %)

구 분		매출액 증가 효과		수익성 개선 효과		고용증가 효과	
			수준		수준		수준
전체 기업		44.6	강	60.0	강	51.7	강
기업유형	사회적기업	47.0	강	60.2	강	53.0	강
	중증장애인시설	87.0	강	63.6	강	61.8	강
	자활기업	53.6	강	42.9	강	14.2	약

주 : 1. 매출액 증가 효과는 매출액 증가에 대한 거래금액 증가의 기여율

2. 수익성 개선 효과는 구매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응답비율

3. 고용증가 효과는 구매확대에 따른 고용증가 응답비율

- 그러나 사회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비해 약한 것으로 평가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이 타 기관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 공무원 및 시민인식에 대한 영향이 보통 수준
 - 다만,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을 계기로 업체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이는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가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이나 증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 전반적으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사회적 영향이 경제적 영향에 비해 약한 것은 이 정책이 아직 실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
-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주된 관심이 초기에는 매출증대에 집중되어 사회적 영향의 근간이 되는 그 배경과 기본 철학이 아직 사회저변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

〈표 4-2〉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사회적 효과

(단위 : %, 점)

구 분		타 기관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		공무원 및 시민 인식에 대한 영향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영향	
			수준		수준		수준
전체 기업		44.6 (3,32)	중	38.2 (3,18)	중	79.8 (4,12)	강
기업유형	사회적기업	46.7 (3,39)	중	39.3 (3,22)	중	83.3 (4,19)	강
	중증장애인시설	44.6 (3,30)	중	34.6 (3,08)	중	76.2 (4,06)	강
	자활기업	28.6 (2,91)	약	40.4 (3,24)	중	77.1 (3,94)	강

주 : 1. 타 기관 조달제도에 대한 영향은 타 기관 조달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비율
 2. 공무원 및 시민인식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비율
 3.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
 4. ()는 각 사회적 영향에 대한 5점 척도 기준 점수

-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기업 유형별로 그 효과가 다소 상이
- － 전체 조사대상의 63.3%를 차지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전체기업보다 다소 높지만 유사한 패턴
 - 경제적 효과는 전체 기업보다 0.2~2.4%p, 사회적 효과는 1.1~3.5%p 높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기업과 유사
 - 단, 사회적 효과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영향은 가장 큰 편

-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전체 기업보다 매우 높은 반면, 사회적 효과는 전체 기업과 유사
 - 경제적 효과는 전체 기업보다 3.6~42.4%p를 상회하고, 특히 매출액 및 고용 증가 효과가 모든 기업유형 중 가장 크게 발생
 - 사회적 효과는 전체 기업보다 -3.6~0.0%p 낮지만 전반적으로 유사
- 자활기업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효과는 대체로 전체 기업보다 낮음
 - 경제적 효과는 전체 기업과 비교해 -37.5~9.0%p 범위이고, 사회적 효과도 전체 기업과 비교해 -2.7~2.2%p 범위로 상대적으로 부진



주 : 분야별 수치의 기준은 <표 4-1>, <표 4-2>와 동일

〈그림 4-1〉 희망기업의 기업유형별 사회 · 경제적 효과

제2절 향후 정책방향

- 서울시의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은 희망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므로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실정
 - － 특히,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는 단순한 자금지원보다 한 차원 높은 정책으로 판단
 -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는 일반기업에 비해 ‘관련업체 매출증가-수익성 개선-고용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큼
- 특히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 희망기업의 개념 재설정 및 우선순위 명확화, ② 통합구매정보시스템 구축, ③ 정책홍보 및 발주정보 제공 강화, ④ 구매품목 다변화와 제품구매 매뉴얼 작성, ⑤ 중견기업과 희망기업의 상생프로그램 구축 등에 주력할 필요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실효성 제고

희망기업 개념 재설정 및 우선순위 명확화	통합구매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홍보 및 발주정보 제공 강화	구매품목 다변화 와 제품 구매 매뉴얼 작성	중견기업과 희망기업 상생프로그램 구축
• 희망기업의 재설정 • 정책대상과 정책목표의 명확화	• 구매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및 체계화 작업 우선 • 희망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물품종류, 기관구매 촉진, 발주 정보 제공 등의 역할	• 소액 구매 건에 대한 발주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희망기업에 입찰 준비기간 제공 •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흡수에 관리	• 희망기업 생산제품 파악과 부처, 기관별 구매 품목 발굴 • 수익제약, 일상경비 지출 매뉴얼 마련을 통한 구매담당자의 희망기업제품 구매 유도	• 중견기업과의 주계약자 공동분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희망기업의 입찰역량 제고 • 인센티브 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중견기업의 희망기업 용역, 물품 수요 유도

〈그림 4-2〉 향후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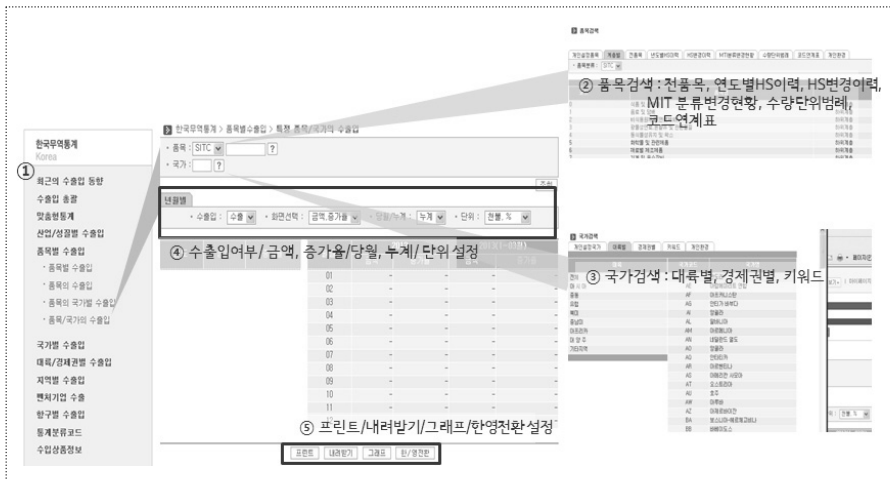
1. 희망기업의 개념 재설정 및 우선순위 명확화

- 서울시에서 공공구매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희망기업은 사실상 중소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책집중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
 - － 현재 희망기업은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기타기업으로 구성
 - － 희망기업의 정의가 사실상 중소기업 모두를 포괄할 경우 정책적 측면에서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차별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정책혼선도 발생 가능
 - － 특히 공공구매 확대 정책은 정책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을 경우 정책집중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
- 공공구매 확대 정책의 취지에 맞추어 희망기업의 개념을 재설정 후 지원수준 및 우선순위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 － 희망기업의 개념 재설정과 중점관리기업의 범위 확대
 - 희망기업의 범위를 공공구매 확대정책의 취지에 맞추어 중기업을 제외하고 자생력이 매우 취약한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한정
 - 현재 중점관리기업의 범위는 전체 희망기업의 0.07%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하므로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외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등을 추가해 점진적으로 확대
 - － 그다음에 희망기업 중 공공구매 필요성이 높은 기업유형을 파악해 지원순위 및 수준, 구매목표 등을 연차별로 설정해 운영
 - 시행 초기인 1~3년차에는 중점관리기업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공공구매 목표를 설정하며, 지원방법도 수의계약, 가산점 신설 및 확대 등 지원 대상별로 차별화
 - 공공구매 성과를 연차별로 점검해 일정 수준 자생력 기반이 조성된 기업 및 기업유형에 대해서는 지원순위를 조정하거나 졸업제 적용

2. 통합구매정보시스템 구축

- 희망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및 구매정보 제공, 물품홍보, 인식제고 등을 위해서는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 현행 서울시 공공구매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실적집계 위주로 희망기업의 체계적인 유형별 실적 조회가 어렵고 구매정보 제공, 물품 홍보 등 통합적 기능도 미흡
 - 현행 시스템은 장애인생산시설이면서 사회적기업인 사업체의 구매실적 분리가 불가능
 - 2012년부터 운영되어 이전 자료는 지출내역 확인을 통해 일일이 수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액거래나 일반경비지출 등은 희망기업 특성별 자료 수합이 불가능
- 특히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은 공공구매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구축할 필요
 - －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은 발주자에게 사업자정보와 상품정보를, 사업자에게는 구매수요정보를 제공받는 접점
 - －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관별 구매목표 관리 및 발주정보 제공, 희망기업 상품의 홍보처로 활용가능하고, 시계열 축적 시 주기적인 정책의 성과분석도 가능
-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의 핵심은 물품코드 등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통한 체계적인 DB화 및 시스템 구축
 - － 희망기업의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분류코드화를 추진
 - 2012년 희망기업이 제공한 품목 중 20.3%를 차지하는 용역의 분류코드가 부재하고, 특히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코드 체계화 시급
 - 품목코드는 e-호조시스템(재정지출시스템)의 분류기준을 활용해 기관 간 연계성을 높이고 담당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 또한 정확한 실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적집계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시스템의 개선 및 연계를 확대
 - 실적기준의 경우 서울시는 원인행위 기준인 반면, SMPP(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는 지급일자 기준으로 상이
 - e-호조시스템은 물품정보 입력을 위해 총액계약 등 모든 품의 시 물품 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SMPP는 사업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 시스템 구축은 1차적으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참조하되, 중장기적으로는 KOTIS의 무역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
 - 품목별, 업종별, 기업유형별, 자치구 및 산하기관별, 부처별 등 다양한 분류별 조회시스템 구축
 - 통합구매정보시스템의 정보입력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해 소액거래 및 일상경비 지출 등의 자료 누수 방지
 - 현재는 주로 계약 혹은 구매 담당자가 정보입력을 담당



〈그림 4-3〉 국가무역통계포털서비스

3. 정책홍보 및 발주정보 제공 강화

- 현재 서울시 희망기업 공공구매는 정책인지도가 낮고, 발주정보 제공이 제한적
 - － 서울시와의 거래업체 중 69%가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잘 모를 정도로 정책홍보가 미흡
 - －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26.6%가 발주정보 부족 때문에 서울시와 거래 기회가 제약
- 중점관리기업 등 희망기업에 대한 정책홍보와 발주정보 서비스를 강화
 - － 서울시 홈페이지, 정책워크숍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추진
 - － 중점관리기업과 관련이 큰 소액구매 건에 대한 발주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이들 기업에 입찰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구매 정보시스템에 흡수 관리
 - 현재는 계약심사 대상(종합공사 5억원 이상, 비종합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만 발주를 예고
 - 물품, 용역 등의 소액구매 건도 미리 발주예고를 할 경우 소규모 희망기업들이 준비 후 입찰 가능

4. 구매품목 다변화와 희망기업제품 구매매뉴얼 작성

- 희망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서는 구매품목의 다변화, 구매품목과 생산품목의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
 - － 2012년 중점관리기업의 거래품목 수는 전체 거래품목수의 6.6%에 불과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41.3%가 발주제품과 구매품목의 미스매치로 거래 기회가 제약

- 희망기업의 제품 파악과 구매품목 공시 강화, 부처·기관별 구매품목 발굴 등을 통해 구매품목 다변화와 구매와 수요의 미스매치 현상 해소
 - 중점관리기업 등 희망기업의 주요 제품 목록과 구매확대 기능품목을 분석한 후 주요 구매 부서·기관에 정보 제공
 - 서울시가 직접 구매하기 힘든 제품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시설 참여로 구매품목을 다변화
- 희망기업제품 구매는 주로 수의계약, 일상경비 지출의 물품 구매이므로 구매담당자의 역할 중요
 - 구매 담당자의 감사적 요소 등을 고려한 법적 근거, 입찰기준,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와 업무 매뉴얼 제공
 -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48)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중점관리기업은 중증장애인시설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수의계약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필요
 - 또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구매 쓸림이나 관행적 구매방지를 위해 업체 및 품목당 일정 비율 이상 구매 방지 등 보완장치 마련
 - 일반적으로 거래를 통해 검증된 업체는 구매담당자의 재구매 성향이 강하여 특정 업체에 구매가 집중될 수 있으나, 구매쓸림이 과다할 경우 구매확산 효과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5. 중견기업과 희망기업의 상생프로그램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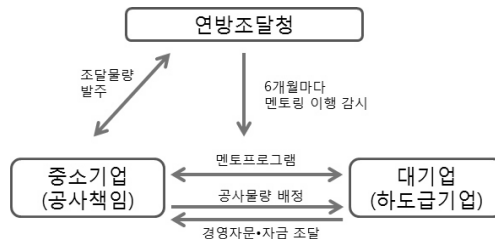
- 희망기업의 단독입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주계약자 공동분담 시스템 구축
 - 희망기업과 계약분담을 할 경우 적격심사 배점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48)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항 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시 사용권은 중견기업이, 소유권은 희망기업이 가지는 형식으로 미국 SBA의 Mentor-Protege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

〈참고〉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Mentor-Protege 프로그램

- Mentor-Protege Program :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발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 － 프로그램 목표는 멘토기업과 프로티지 기업의 상승작용을 꾀하는 것으로, 불평등·불균형 해소를 위해 프로티지 기업의 접근을 공평하게 해주는 것
- 지원내용
 - － 프로티지 기업에 대한 멘토기업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
 - － 하도급 형식의 프로티지 기업 지원
- 정부역할
 - － 프로티지 기업과 멘토기업 간 계약적인 협정이 맺어지는데, 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연방정부
 - － SBA가 멘토기업의 우위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진행 상태를 확인·평가하고 프로티지 기업들의 이익여부를 확인
- 멘토기업과 프로티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 멘토기업 : 연방정부의 조달계약, 연방계약 체결 등의 접근 용이
 - － 프로티지 기업 : 멘토기업의 전문적인 지식 및 역량 사용 가능, 멘토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량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계약체결 가능



〈그림〉美 연방조달시장 상생프로그램

참고 : 중소기업연구원, 2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매일경제, 2011.5.16, “美 연방조달시장서 배우는 ‘기업 상생’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 준다”

- 인센티브 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중견기업의 희망기업 용역, 물품, 공사 수요를 유도
 - － 인센티브 계약제도 : 계약조건에 명시된 하도급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최종 대금 지급 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 지급
 -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희망기업 용역의뢰를 명시하는 정책에 활용하면, 중견기업의 희망기업 용역 구매 활성화가 기대

〈참고〉 미국 수송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하청계약 우대제도

- 하청계약 우대제도의 개념
 - － 여성기업이나 소수집단 소유 기업과 하청계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당 하청계약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자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
- 지원내용
 - － 추가적인 금액은 주계약자가 하청계약자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총 계약금액의 1.5~2.0% 정도를 지불
- 정부역할
 - － 소수집단 소유기업이나 사회·경제적 약자기업의 조달계약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들 기업이 연방조달계약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

참고 : 김태홍·이승길 외 1인, 2003, 「정부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김대식, 20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89-112, 지방계약연구학회
- 김정호 · 이미정 외 3인, 2008,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지원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 조달청
- 김정호 · 백창석 외 2인, 2006, 『공공조달시장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 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 김태홍 · 이승길 외 1인, 2003,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서울특별시 재무국, 2013, “서울시 공공조달 종합정책 수립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재무국
- 서울특별시 재무국, 2012,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서울특별시 재무국
- 서울특별시 재무국, 2012, “사회적 약자기업제품구매 확대 계획”, 서울특별시 재무국
- 송수정 · 원준호, 2013,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12권 제3호 145-151, 대한안전경영과학회
- 송장준, 200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윤경준, 2009,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정책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2호, 117-14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중소기업연구원, 200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2012,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20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서」, 중소기업청
한상연 · 손병호, 2010,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참여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공공
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3권 제2호 310-331, 한국
기술혁신학회
홍석일, 200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현황과 과제」, 산업연구원

<http://www.smpp.go.kr/>(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tat.kita.net/>(국가무역통계포털서비스)

<http://www.mk.co.kr/>(매일경제)

부 록



〈부록 표 1〉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기업에 대한 영향

(단위 : %)

		사선수 (명)	매출 안정 및 증대	타 기관 판로 개척 용이	고용 증가	사회적 목적 달성 기여	가격 경쟁력 증대	제품 품질 제고	기타
전 체		406	41,6	23,4	16,3	8,9	3,7	2,5	3,7
기업 유형	사회적기업	257	40,1	24,5	14,8	10,1	3,9	3,1	3,5
	자활기업	35	42,9	25,7	8,6	17,1	2,9	0,0	2,9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30	46,9	21,5	20,8	5,4	2,3	1,5	1,5
	기타기업	13	23,1	15,4	30,8	0,0	7,7	0,0	23,1
종업원 수	1~4명	63	42,9	27,0	9,5	9,5	3,2	1,6	6,3
	5~9명	121	35,5	26,4	14,9	12,4	4,1	3,3	3,3
	10~29명	140	46,4	17,1	18,6	7,9	3,6	2,9	3,6
	30~49명	53	43,4	30,2	17,0	3,8	1,9	1,9	1,9
	50명 이상	25	40,0	24,0	20,0	8,0	8,0	0,0	0,0
	모름/무응답	4	25,0	0,0	50,0	0,0	0,0	0,0	25,0
서울시 거래 경험	있다	297	42,8	23,9	15,5	9,1	3,4	2,4	3,0
	없다	109	38,5	22,0	18,3	8,3	4,6	2,8	5,5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43,4	24,5	10,7	8,2	3,8	3,8	5,7
	1억원 이상	96	43,8	22,9	20,8	8,3	3,1	1,0	0,0
	모름/무응답	42	38,1	23,8	21,4	14,3	2,4	0,0	0,0

〈부록 표 2〉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 증감여부

(단위 : %)

		2011년 매출액 (평균 : 백만원)	2012년 매출액 (평균 : 백만원)	사례수 (명)	증감여부				
					증가	감소	동일	비해당	모름/ 무응답
전 체		683	784	297	52.5	15.2	27.3	3.0	2.0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598	715	181	56.9	12.2	27.6	1.7	1.7
	자활기업	322	378	24	50.0	16.7	20.8	8.3	4.2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961	1,122	105	51.4	17.1	25.7	3.8	1.9
	기타기업	1,479	1,402	10	40.0	40.0	20.0	0.0	0.0
종업원 수	1~4명	107	133	39	48.7	12.8	35.9	2.6	0.0
	5~9명	352	349	84	48.8	15.5	27.4	7.1	1.2
	10~29명	662	850	106	54.7	16.0	27.4	1.9	0.0
	30~49명	1,152	1,393	47	59.6	14.9	19.1	0.0	6.4
	50명 이상	2,105	2,098	19	47.4	15.8	31.6	0.0	5.3
	모름/무응답	34	150	2	50.0	0.0	0.0	0.0	50.0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764	950	92	59.8	14.1	20.7	4.3	1.1
	비인지	648	711	205	49.3	15.6	30.2	2.4	2.4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370	422	159	54.7	13.8	25.8	3.8	1.9
	1억원 이상	1,187	1,387	96	54.2	14.6	27.1	2.1	2.1
	모름/무응답	686	748	42	40.5	21.4	33.3	2.4	2.4

〈부록 표 3〉 2011년 대비 2012년 거래금액 증감여부

(단위 : %)

		2011년 매출액 (평균 : 백만원)	2012년 매출액 (평균 : 백만원)	사례수 (명)	증감여부				
					증가	감소	동일	비해당	모름/ 무응답
전 체		334	379	297	39,7	11,4	37,0	3,0	8,8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175	230	181	42,5	10,5	37,6	1,7	7,7
	자활기업	178	208	24	29,2	8,3	37,5	8,3	16,7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611	751	105	43,8	11,4	33,3	3,8	7,6
	기타기업	762	778	10	20,0	20,0	50,0	0,0	10,0
종업원 수	1~4명	48	51	39	28,2	10,3	48,7	2,6	10,3
	5~9명	126	130	84	39,3	10,7	34,5	7,1	8,3
	10~29명	317	343	106	40,6	16,0	34,0	1,9	7,5
	30~49명	780	936	47	48,9	8,5	34,0	0,0	8,5
	50명 이상	734	941	19	36,8	0,0	47,4	0,0	15,8
	모름/무응답	-	95	2	50,0	0,0	50,0	0,0	0,0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512	592	92	43,5	12,0	31,5	4,3	8,7
	비인지	253	276	205	38,0	11,2	39,5	2,4	8,8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30	28	159	40,9	13,8	39,0	3,8	2,5
	1억원 이상	685	828	96	52,1	12,5	33,3	2,1	0,0
	모름/무응답	220	-	42	7,1	0,0	38,1	2,4	52,4

〈부록 표 4〉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수익성 개선 효과

(단위 : %)

		사례수 (명)	5% 미만 개선	5~10% 미만 개선	10% 이상 개선	개선	변화 없음
전 체		170	22,9	11,8	25,3	60,0	40,0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113	22,1	13,3	24,8	60,2	39,8
	자활기업	14	28,6	0,0	14,3	42,9	57,1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55	20,0	12,7	30,9	63,6	36,4
	기타기업	5	20,0	0,0	20,0	40,0	60,0
종업원 수	1~4명	21	23,8	4,8	9,5	38,1	61,9
	5~9명	48	14,6	14,6	29,2	58,4	41,7
	10~29명	61	27,9	11,5	24,6	64,0	36,1
	30~49명	29	31,0	10,3	20,7	62,0	37,9
	50명 이상	10	10,0	20,0	50,0	80,0	2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100,0	0,0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57	22,8	19,3	31,6	73,7	26,3
	비인지	113	23,0	8,0	22,1	53,1	46,9
매출액 증감여부	증가	156	22,4	12,8	25,6	60,8	39,1
	감소	5	0,0	0,0	40,0	40,0	60,0
	동일	8	50,0	0,0	12,5	62,5	37,5
	비해당/무응답	1	0,0	0,0	0,0	0,0	100,0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증감여부	증가	118	25,4	12,7	28,8	66,9	33,1
	감소	9	0,0	22,2	11,1	33,3	66,7
	동일	31	19,4	3,2	16,1	38,7	61,3
	비해당/무응답	12	25,0	16,7	25,0	66,7	33,3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93	25,8	9,7	22,6	58,1	41,9
	1억원 이상	59	18,6	15,3	28,8	62,7	37,3
	모름/무응답	18	22,2	11,1	27,8	61,1	38,9

〈부록 표 5〉 2012년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의 고용증가 효과

(단위 : %)

		사례수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고용증가	없다
전 체		170	3,5	8,2	6,5	3,5	30,0	51,7	48,2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113	3,5	9,7	8,0	3,5	28,3	53,0	46,9
	자활기업	14	7,1	0,0	7,1	0,0	0,0	14,2	85,7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55	3,6	5,5	3,6	7,3	41,8	61,8	38,2
	기타기업	5	0,0	20,0	0,0	0,0	40,0	60,0	40,0
종업원 수	1~4명	21	9,5	9,5	4,8	0,0	0,0	23,8	76,2
	5~9명	48	4,2	10,4	6,3	2,1	14,6	37,6	62,5
	10~29명	61	1,6	4,9	9,8	4,9	37,7	58,9	41,0
	30~49명	29	0,0	6,9	3,4	6,9	48,3	65,5	34,5
	50명 이상	10	10,0	10,0	0,0	0,0	70,0	90,0	1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0,0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57	0,0	10,5	5,3	1,8	33,3	50,9	49,1
	비인지	113	5,3	7,1	7,1	4,4	28,3	52,2	47,8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93	4,3	9,7	7,5	2,2	21,5	45,2	54,8
	1억원 이상	59	0,0	3,4	5,1	5,1	44,1	57,7	42,4
	모름/무응답	18	11,1	16,7	5,6	5,6	27,8	66,8	33,3

〈부록 표 6〉 희망구매 확대정책의 긍정적 영향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406	6.4	12.1	36.9	32.8	11.8	18.5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257	5.4	9.7	38.1	33.5	13.2	15.2
	자활기업	35	17.1	8.6	45.7	22.9	5.7	25.7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30	4.6	14.6	36.2	35.4	9.2	19.2
	기타기업	13	7.7	30.8	30.8	7.7	23.1	38.5
종업원 수	1~4명	63	9.5	11.1	44.4	28.6	6.3	20.6
	5~9명	121	7.4	18.2	32.2	32.2	9.9	25.6
	10~29명	140	6.4	10.0	35.7	36.4	11.4	16.4
	30~49명	53	3.8	7.5	43.4	35.8	9.4	11.3
	50명 이상	25	0.0	8.0	36.0	24.0	32.0	8.0
	모름/무응답	4	0.0	0.0	25.0	0.0	75.0	0.0
서울시 거래경험	있다	297	5.1	11.1	37.4	34.3	12.1	16.2
	없다	109	10.1	14.7	35.8	28.4	11.0	24.8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92	1.1	5.4	32.6	40.2	20.7	6.5
	비인지	205	6.8	13.7	39.5	31.7	8.3	20.5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4.4	10.1	37.1	34.6	13.8	14.5
	1억원 이상	96	7.3	10.4	31.3	37.5	13.5	17.7
	모름/무응답	42	2.4	16.7	52.4	26.2	2.4	19.0

〈부록 표 7〉 희망구매 확대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기업체의 긍정적영향	구매관련 문의증대	구매정책의 확대/변화	지원정책의 접촉경험	기타
전 체		181	39,2	24,9	22,1	12,2	1,7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120	40,8	22,5	20,0	14,2	2,5
	자활기업	10	70,0	10,0	10,0	10,0	0,0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58	24,1	37,9	32,8	5,2	0,0
	기타기업	4	25,0	25,0	25,0	25,0	0,0
종업원 수	1~4명	22	45,5	18,2	13,6	22,7	0,0
	5~9명	51	45,1	23,5	19,6	11,8	0,0
	10~29명	67	38,8	25,4	23,9	9,0	3,0
	30~49명	24	16,7	37,5	33,3	12,5	0,0
	50명 이상	14	42,9	21,4	21,4	14,3	0,0
	모름/무응답	3	66,7	0,0	0,0	0,0	33,3
서울시 거래경험	있다	138	31,2	28,3	26,1	13,8	0,7
	없다	43	65,1	14,0	9,3	7,0	4,7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56	39,3	25,0	25,0	10,7	0,0
	비인지	82	25,6	30,5	26,8	15,9	1,2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77	40,3	20,8	24,7	13,0	1,3
	1억원 이상	49	20,4	38,8	26,5	14,3	0,0
	모름/무응답	12	16,7	33,3	33,3	16,7	0,0

〈부록 표 8〉 서울시 구매정책이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인식에 미친 긍정적 변화 정도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5점 평균 (점)
전 체		406	5.4	17.0	38.9	30.8	7.4	0.5	3.18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257	4.7	16.0	39.3	31.1	8.2	0.8	3.22
	자활기업	35	5.7	17.1	34.3	28.6	11.4	2.9	3.24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30	6.2	18.5	40.8	30.0	4.6	0.0	3.08
	기타기업	13	7.7	30.8	23.1	30.8	7.7	0.0	3.00
종업원 수	1~4명	63	4.8	14.3	41.3	28.6	9.5	1.6	3.24
	5~9명	121	5.0	22.3	38.8	25.6	7.4	0.8	3.08
	10~29명	140	7.1	16.4	37.1	35.0	4.3	0.0	3.13
	30~49명	53	5.7	9.4	49.1	30.2	5.7	0.0	3.21
	50명 이상	25	0.0	20.0	24.0	36.0	20.0	0.0	3.56
	모름/무응답	4	0.0	0.0	25.0	50.0	25.0	0.0	4.00
서울시 거래경험	있다	297	4.4	16.5	38.7	32.7	7.1	0.7	3.22
	없다	109	8.3	18.3	39.4	25.7	8.3	0.0	3.07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92	2.2	12.0	34.8	37.0	14.1	0.0	3.49
	비인지	205	5.4	18.5	40.5	30.7	3.9	1.0	3.09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3.8	18.2	39.0	30.8	6.9	1.3	3.19
	1억원 이상	96	4.2	12.5	41.7	35.4	6.3	0.0	3.27
	모름/무응답	42	7.1	19.0	31.0	33.3	9.5	0.0	3.19

〈부록 표 9〉 희망기업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및 의향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점)
전 체		406	1.0	3.2	16.0	42.9	36.9	4.12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257	0.8	1.6	14.4	44.4	38.9	4.19
	자활기업	35	0.0	8.6	14.3	51.4	25.7	3.94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30	0.8	3.8	19.2	40.8	35.4	4.06
	기타기업	13	7.7	23.1	23.1	15.4	30.8	3.38
종업원 수	1~4명	63	3.2	7.9	17.5	42.9	28.6	3.86
	5~9명	121	0.0	3.3	15.7	44.6	36.4	4.14
	10~29명	140	0.7	2.1	13.6	45.0	38.6	4.19
	30~49명	53	1.9	0.0	24.5	35.8	37.7	4.08
	50명 이상	25	0.0	4.0	8.0	44.0	44.0	4.28
	모름/무응답	4	0.0	0.0	25.0	0.0	75.0	4.50
서울시 거래경험	있다	297	1.3	3.4	13.5	45.8	36.0	4.12
	없다	109	0.0	2.8	22.9	34.9	39.4	4.11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92	1.1	3.3	9.8	40.2	45.7	4.26
	비인지	205	1.5	3.4	15.1	48.3	31.7	4.05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1.9	3.8	11.9	46.5	35.8	4.11
	1억원 이상	96	1.0	2.1	12.5	41.7	42.7	4.23
	모름/무응답	42	0.0	4.8	21.4	52.4	21.4	3.90

〈부록 표 10〉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거래업체 인지도

(단위 : %)

		사례수 (명)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종합	
						인지	비인지
전 체		297	8.8	22.2	69.0	31.0	69.0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181	7.7	21.5	70.7	29.3	70.7
	자활기업	24	12.5	29.2	58.3	41.7	58.3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05	7.6	21.9	70.5	29.5	70.5
	기타기업	10	20.0	10.0	70.0	30.0	70.0
종업원 수	1~4명	39	7.7	17.9	74.4	25.6	74.4
	5~9명	84	11.9	19.0	69.0	31.0	69.0
	10~29명	106	7.5	17.9	74.5	25.5	74.5
	30~49명	47	8.5	36.2	55.3	44.7	55.3
	50명 이상	19	5.3	31.6	63.2	36.8	63.2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50.0	50.0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6.3	18.2	75.5	24.5	75.5
	1억원 이상	96	11.5	31.3	57.3	42.7	57.3
	모름/무응답	42	11.9	16.7	71.4	28.6	71.4

〈부록 표 11〉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 중 도움이 된 방안

(단위 : %)

		사례수 (명)	수익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	가산점 부여	수행실적 제안의 완화	유사실적 인정	희망기업 제품 구매 및 용역수행의 특수조건	도움되지 않았음	무응답
전 체		297	21,9	20,9	14,8	11,1	11,1	2,0	18,2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181	20,4	22,7	14,9	11,6	11,0	1,1	18,2
	자활기업	24	20,8	29,2	4,2	8,3	16,7	0,0	20,8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05	26,7	18,1	15,2	9,5	8,6	1,9	20,0
	기타기업	10	20,0	10,0	20,0	10,0	10,0	20,0	10,0
종업원 수	1~4명	39	23,1	15,4	12,8	7,7	5,1	5,1	30,8
	5~9명	84	25,0	21,4	15,5	10,7	14,3	1,2	11,9
	10~29명	106	21,7	23,6	17,0	11,3	9,4	1,9	15,1
	30~49명	47	14,9	21,3	12,8	8,5	12,8	2,1	27,7
	50명 이상	19	26,3	15,8	10,5	21,1	10,5	0,0	15,8
	모름/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0,0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20,1	19,5	14,5	11,3	10,1	3,1	21,4
	1억원 이상	96	29,2	17,7	18,8	9,4	11,5	1,0	12,5
	모름/무응답	42	11,9	33,3	7,1	14,3	14,3	0,0	19,0

〈부록 표 12〉 '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 효과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점)
전 체		92	5.4	15.2	37.0	25.0	17.4	3.34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53	9.4	13.2	45.3	24.5	7.5	3.08
	자활기업	10	0.0	30.0	20.0	10.0	40.0	3.60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31	0.0	12.9	32.3	29.0	25.8	3.68
	기타기업	3	0.0	33.3	0.0	0.0	66.7	4.00
종업원 수	1~4명	10	10.0	10.0	40.0	10.0	30.0	3.40
	5~9명	26	3.8	23.1	34.6	26.9	11.5	3.19
	10~29명	27	7.4	18.5	33.3	25.9	14.8	3.22
	30~49명	21	0.0	9.5	47.6	23.8	19.0	3.52
	50명 이상	7	14.3	0.0	28.6	42.9	14.3	3.43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5.00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39	7.7	17.9	38.5	17.9	17.9	3.21
	1억원 이상	41	4.9	9.8	41.5	26.8	17.1	3.41
	모름/무응답	12	0.0	25.0	16.7	41.7	16.7	3.50

〈부록 표 13〉 ‘동일실적 이외 유사실적 인정’ 효과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점)
전 체		92	5.4	7.6	31.5	37.0	18.5	3.55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53	7.5	11.3	24.5	43.4	13.2	3.43
	자활기업	10	0.0	0.0	40.0	20.0	40.0	4.00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31	3.2	3.2	45.2	29.0	19.4	3.58
	기타기업	3	0.0	0.0	33.3	0.0	66.7	4.33
종업원 수	1~4명	10	10.0	10.0	20.0	20.0	40.0	3.70
	5~9명	26	7.7	7.7	26.9	38.5	19.2	3.54
	10~29명	27	7.4	7.4	29.6	44.4	11.1	3.44
	30~49명	21	0.0	4.8	52.4	28.6	14.3	3.52
	50명 이상	7	0.0	14.3	14.3	57.1	14.3	3.7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5.00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39	10.3	7.7	25.6	35.9	20.5	3.49
	1억원 이상	41	2.4	9.8	34.1	36.6	17.1	3.56
	모름/무응답	12	0.0	0.0	41.7	41.7	16.7	3.75

〈부록 표 14〉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 효과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점)
전 체		92	3,3	8,7	29,3	35,9	22,8	3,66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53	5,7	11,3	28,3	39,6	15,1	3,47
	자활기업	10	0,0	0,0	20,0	50,0	30,0	4,10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31	0,0	6,5	32,3	29,0	32,3	3,87
	기타기업	3	0,0	0,0	33,3	0,0	66,7	4,33
종업원 수	1~4명	10	10,0	10,0	20,0	30,0	30,0	3,60
	5~9명	26	0,0	15,4	26,9	42,3	15,4	3,58
	10~29명	27	7,4	3,7	33,3	37,0	18,5	3,56
	30~49명	21	0,0	9,5	33,3	33,3	23,8	3,71
	50명 이상	7	0,0	0,0	28,6	28,6	42,9	4,14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5,00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39	5,1	10,3	33,3	35,9	15,4	3,46
	1억원 이상	41	2,4	7,3	22,0	34,1	34,1	3,90
	모름/무응답	12	0,0	8,3	41,7	41,7	8,3	3,50

〈부록 표 15〉 ‘희망기업에의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 효과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점)
전 체		92	2,2	8,7	35,9	28,3	25,0	3,65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53	3,8	11,3	30,2	32,1	22,6	3,58
	자활기업	10	0,0	0,0	40,0	40,0	20,0	3,80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31	0,0	6,5	41,9	19,4	32,3	3,77
	기타기업	3	0,0	0,0	33,3	0,0	66,7	4,33
종업원 수	1~4명	10	0,0	10,0	20,0	30,0	40,0	4,00
	5~9명	26	0,0	11,5	26,9	42,3	19,2	3,69
	10~29명	27	7,4	11,1	40,7	14,8	25,9	3,41
	30~49명	21	0,0	4,8	47,6	28,6	19,0	3,62
	50명 이상	7	0,0	0,0	42,9	28,6	28,6	3,86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5,00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39	5,1	10,3	41,0	25,6	17,9	3,41
	1억원 이상	41	0,0	7,3	31,7	26,8	34,1	3,88
	모름/무응답	12	0,0	8,3	33,3	41,7	16,7	3,67

〈부록 표 16〉 서울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의 효과 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점)
전 체		92	3,3	8,7	29,3	40,2	18,5	3,62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53	5,7	9,4	28,3	45,3	11,3	3,47
	자활기업	10	0,0	10,0	20,0	20,0	50,0	4,10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31	0,0	3,2	35,5	41,9	19,4	3,77
	기타기업	3	0,0	33,3	0,0	0,0	66,7	4,00
종업원 수	1~4명	10	0,0	40,0	0,0	20,0	40,0	3,60
	5~9명	26	3,8	7,7	30,8	46,2	11,5	3,54
	10~29명	27	7,4	3,7	22,2	51,9	14,8	3,63
	30~49명	21	0,0	4,8	47,6	28,6	19,0	3,62
	50명 이상	7	0,0	0,0	42,9	42,9	14,3	3,7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5,00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39	5,1	7,7	30,8	35,9	20,5	3,59
	1억원 이상	41	2,4	4,9	31,7	43,9	17,1	3,68
	모름/무응답	12	0,0	25,0	16,7	41,7	16,7	3,50

〈부록 표 17〉 희망기업의 서울시와 거래기회 제약요인

(단위 : %)

		사례수 (명)	발주제품의 미생산	정보가 없어서	입찰요건 미달	낙찰되지 못해서	요구사항의 미충족	거리가 멀어서	기타
전 체		109	41.3	26.6	12.8	6.4	3.7	3.7	5.5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76	47.4	28.9	6.6	6.6	3.9	0.0	6.6
	자활기업	11	18.2	18.2	36.4	18.2	0.0	0.0	9.1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25	36.0	24.0	12.0	4.0	8.0	16.0	0.0
	기타기업	3	0.0	0.0	100.0	0.0	0.0	0.0	0.0
종업원수	1~4명	24	29.2	29.2	20.8	4.2	4.2	0.0	12.5
	5~9명	37	48.6	27.0	8.1	8.1	0.0	2.7	5.4
	10~29명	34	44.1	26.5	11.8	2.9	5.9	5.9	2.9
	30~49명	6	50.0	33.3	0.0	16.7	0.0	0.0	0.0
	50명 이상	6	33.3	0.0	33.3	0.0	16.7	16.7	0.0
	모름/무응답	2	0.0	50.0	0.0	50.0	0.0	0.0	0.0

〈부록 표 18〉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단위 : %)

		사례수 (명)	수의 계약 확대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 가산점 신설	사회적 책임 이행분야를 평가항목 도입	2억 3천만원 미만 용역 중소기업자로 만 자격제한	근로자 임금 우대기업 가산점 신설	기타
전 체		406	34,5	26,6	13,3	10,1	7,6	7,9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257	30,4	29,2	14,8	11,7	7,0	7,0
	자활기업	35	31,4	25,7	5,7	8,6	8,6	20,0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30	47,7	21,5	10,0	5,4	8,5	6,9
	기타기업	13	23,1	30,8	15,4	15,4	7,7	7,7
종업원 수	1~4명	63	33,3	20,6	12,7	12,7	6,3	14,3
	5~9명	121	41,3	22,3	14,9	7,4	5,8	8,3
	10~29명	140	33,6	32,1	10,0	12,9	7,1	4,3
	30~49명	53	24,5	28,3	15,1	9,4	13,2	9,4
	50명 이상	25	36,0	28,0	20,0	0,0	12,0	4,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0,0	25,0
서울시 거래 경험	있다	297	33,3	27,6	14,1	10,4	8,4	6,1
	없다	109	37,6	23,9	11,0	9,2	5,5	12,8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92	33,7	21,7	18,5	14,1	9,8	2,2
	비인지	205	33,2	30,2	12,2	8,8	7,8	7,8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30,2	29,6	17,6	11,9	5,7	5,0
	1억원 이상	96	39,6	24,0	8,3	10,4	9,4	8,3
	모름/무응답	42	31,0	28,6	14,3	4,8	16,7	4,8

〈부록 표 19〉 서울시와 거래확대를 위한 사업체의 개선사항

(단위 : %)

		사례수 (명)	공공기관 영업 및 판촉 통로 구축	발주 정보의 사전확인	새로운 품목과 서비스 개발	품목 디자인과 질 개선	기타
전 체		406	55.4	20.7	12.1	7.4	4.4
기업유형 (소분류)	사회적기업	257	52.5	23.7	12.5	6.2	5.1
	자활기업	35	42.9	31.4	11.4	11.4	2.9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130	63.8	16.2	10.0	6.9	3.1
	기타기업	13	53.8	7.7	23.1	7.7	7.7
종업원 수	1~4명	63	50.8	23.8	12.7	7.9	4.8
	5~9명	121	53.7	23.1	14.0	5.8	3.3
	10~29명	140	50.0	25.0	9.3	10.0	5.7
	30~49명	53	66.0	7.5	13.2	7.5	5.7
	50명 이상	25	88.0	0.0	12.0	0.0	0.0
	모름/무응답	4	25.0	50.0	25.0	0.0	0.0
서울시 거래 경험	있다	297	57.6	18.5	13.1	7.4	3.4
	없다	109	49.5	26.6	9.2	7.3	7.3
희망기업 지원 방안 인지도	인지	92	62.0	14.1	13.0	10.9	0.0
	비인지	205	55.6	20.5	13.2	5.9	4.9
2012년 서울시와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159	56.6	18.2	13.8	7.5	3.8
	1억원 이상	96	59.4	21.9	10.4	5.2	3.1
	모름/무응답	42	57.1	11.9	16.7	11.9	2.4

〈부록 조사표 1〉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 배려를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서울시정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귀사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 희망기업의 제품구매를 증대시키고 기업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 배려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서 느끼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귀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사의 성실한 답변은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자활기업 등 희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정책 수립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사의 경성스런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조사의뢰기관 : 서울특별시 재무과

조사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이민영 연구원(02-3218-9660)

「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업명		설립연도	
회사주소			
기업 규모	① 대기업() ② 중기업() ③ 소기업() ④소상공인()		
회사유형(중복 체크 가능)	① 사회적기업() ② 자활기업() ③ 중증장애인생산시설() ④ 기타기업(기재:)		
상시 근로자수(종업원 수)			

응답자 성명		부서 및 직위	
응답자 전화 번호		팩스번호	
응답자 e-mail			

〈부록 조사표 1〉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분야

문1. 귀사는 서울시, 자치구청 및 투자·출연기관과 거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문3으로 이동)

※ 투자출연기관 :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재)서울산업통합상권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문2. 귀사는 2012년 6월 이전부터 서울시와 거래를 한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2012년 6월 이후 신규로 거래한 업체입니까?

- 1) 기존 거래 업체

2) 신규 진입 업체

문3. 귀사에서 서울시와의 거래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서울시 발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2)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 미달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서
- 3) 서울시 발주제품과 일치하는 생산품목이 없어서
- 4) 서울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해서
- 5)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서비스(A/S포함)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서
- 6)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 7)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문4. 입찰에서 낙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가격
- 2) 실적, 수행경험
- 3) 경영상태
- 4) 제안서 발표 시 프리젠테이션 능력
- 5)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

〈부록 조사표 1〉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희망 기업 지원 방안	- 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 - 유사실적 인정을 통해 진입장벽 완화 -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에 가산점을 확대 -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 - 공사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희망기업 제품 구매와 용역 의뢰를 명시
----------------------	--

문5. 귀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2012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희망기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잘 모른다

문6. 귀하께서는 서울시와 거래 시 희망기업 지원방안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입찰자격 요건인 수행실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
- 2) 동일실적 이외 유사실적도 인정하는 것
- 3)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 또는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
- 4) 희망기업에의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
- 5) 공사 및 용역계약 때 하도급 시 희망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희망기업에 용역 수행을 의뢰토록 명시하는 특수조건 이행

문7.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입찰시 실적제한 완화] 지원 방안이 제품 구매 및 매출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8.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동일실적 이외 유사실적을 인정] 하는 지원 방안이 제품 구매 및 매출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부록 조사표 1〉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문9.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
하는 지원 방안이 제품 구매 및 매출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 |

문10.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희망기업에의 수익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 확대] 지원 방안이 제품 구매 및
매출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 |

문11.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하도급시 희망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용역을 이행토록 명시한 공사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방안이 제품 구매 및 매출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 |

문12. 귀하께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5가지 [희망기업 지원 방안]이 제품 구매 및 매출 증진에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 |

문13. 귀사에서 희망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서울시에 가장 바라는 제도 개선 항목은 무엇입니까?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분야를 평가 항목에 도입
- 2) 근로자 임금 우대기업에 가산점 신설
- 3)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에 가산점 신설
- 4) 수익계약 확대
- 5) 2억 3천만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만 제한
- 6)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부록 조사표 1〉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희망기업 제품 구매 확대정책 분야

※ 서울시는 2012년부터 [희망구매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귀사의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구매 확대정책]으로 인한 귀사의 형태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4. 귀사는 2011년과 비교해 2012년 매출액과 서울시(및 관련기관과)와의 거래금액은 어떠하십니까?

※ 2011년 대비 매출액, 서울시와의 거래금액의 증감을 알기 위한 목적
 ※ 대략적인 금액 기재 허용 / 변화없다라고 할 경우, 한해에 한해 대략적인 금액을 결의 / “3억” 응답시, “3억”으로 기재(향후 리코딩 예정) / 지금 잘 알지 못하고 파일을 찾아 봐야한다고 할 경우, 서울시에서 귀사와 같은 ____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므로 파일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요청

	2011년	2012년	증감여부(조사원 체크)
1) 매출액			1) 증가 2) 감소 3) 동일
2)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거래금액			1) 증가 2) 감소 3) 동일

문15. 거래금액이 늘어났다면, 희망구매 확대정책 이전보다 늘어난 품목은 무엇입니까? 매출액이 큰 순서대로 3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각각의 품목에 대해 2011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어느 정도 인니까?

품 목	증가율(%)
1)	
2)	
3)	

문16. 희망구매 확대정책에 따른 매출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까?

- 1) 변화없음 2) 5% 미만 개선 3) 5~10% 미만 개선
 4) 10% 이상 개선

문17. 희망구매 확대정책 이후 매출 증가로 인해 귀사의 고용은 2011년 대비 몇 명이나 증가하였습니까?

-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부록 조사표 1〉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문18. 서울시와의 거래 시 서울시의 지원제도 중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 1) 희망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제도
- 2) 가산점 부여, 실적인정범위 완화 등 계약제도 개선
- 3) 에이블마켓, 사파이어몰 등 구매웹사이트 구축
- 4) 물품을 일반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구매 엑스포 개최
- 5)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문19. 서울시의 희망구매 확대정책 및 서울시와의 거래가 어떤 면에서 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고정적 판로 확보로 인한 매출 안정 및 증대
- 2) 납품 수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근로자 숙련도 상승으로 인한 제품 품질 제고
- 3) 공공기관과의 거래로 인한 신뢰 축적으로 타 기관 판로 개척 용이
- 4) 거래량 확대로 인한 생산원가 감소로 가격경쟁력 증대
- 5) 매출증대에 따른 고용증가
- 6) 사회공헌 등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기여
- 7)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문20. 서울시의 희망구매확대 정책이 정부기관과 다른 자치단체의 조달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문2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부부처 및 타 자치단체의 구매 정책이 확대/변화되었음
- 2) 정부기관 및 타 자치단체로부터 구매 관련 문의가 증대되었음
- 3) 정부기관 및 타 자치단체에 유사한 제도나 지원정책이 실시되는 것을 언론보도나 지인 등을 통해 접한 경향이 있음
- 4) 구매확대 정책 시행으로 파급적으로 기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 5) 기타()

문22. 서울시의 희망구매 확대 정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희망기업의 존재 가치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부록 조사표 1〉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문23. 서울시의 희망구매 확대 정책을 통해서 귀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 장애인 채용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 |

문24. 서울시와의 거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취급하는 품목의 디자인과 질 개선
- 2)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품목이나 서비스 개발
- 3) 공공기관 영업 및 판촉 통로 구축
- 4) 서울시 발주 정보의 사전 확인
- 5)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연 2013-OR-07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발 행 인 이 창 현

발 행 일 2013년 5월 24일

발 행 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비매품 ISBN 978-89-8052-972-8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